

이 매뉴얼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관계법상의 구속력과 개별 법률 도서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매뉴얼 상의 법령, 통계 등은 최대한 최신자료(2024년 12월 기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근거로 우리시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매뉴얼의 내용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2133-2079, 20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01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의 성격 및 직무	002
2. 구 성	002
가. 위원	002
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003
다. 간사와 서기	004

02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

1. 운영 개요	006
2. 회의 유형	006
3. 회의장 설치	007
4. 위원회 운영	008
5. 회의록	010
6. 처리기간 및 안건재상정 금지	011
7. 회의결과 조치 등	012
8. 용어의 정리	012
가. 의결유형	012
나. 정족수	013
다. 동의, 토론, 표결	013
라. 과반수	014
마. 상정	014
바. 미료안건	014



0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및 절차



[1]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1. 본위원회 상정대상 016
2. 소위원회 자문대상 017
3. 심의생략 가능한 사항(경미한 변경) 017

[2]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절차

1.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 절차 018
2.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협의 및 사업시행 절차 019
3.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 절차 020
4. 도시공원 통합관리 자문 절차(소위원회) 021
 - 4-1. 통합관리 도서가 작성된 경우(별도 협의하여 추진) 021
 - 4-2. 통합관리 도서가 없는 경우 022

04 공원조성계획 심의기준

[1] 공통사항

1.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024
2. 공원시설의 종류 025
3.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027
4. 공원조성계획 수립 기준 029
5. 공원 시설물 설치 기준 030
6. 도시공원시설의 안전 기준 031
7. 범죄예방을 위한 공원 계획·조성 기준 032
8.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기준 033
9. 공원 내 비오톱1등급 토지 개발행위 기준(안) 034

[2] 공원시설별 설치기준

1. 공원 내 건축물 설치 기준 035
2.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039
3. 부적합 배드민턴장 정비 기준 041
4. 공원 내 게이트볼장 설치관련 정책방향 042
5. 공공미술 설치 042
6. 공원 내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설치기준 043
7. 맨발산책로 설치 기준 043
8. 야영장 설치 기준 046
9. 녹지연결로 설치 기준 047

※ 참고자료

1.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 050
2.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자문 기준 056

05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전협의 기준



1.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운영 058
2. 지하주차장 설치 조건 058
3. 저류시설 설치 조건 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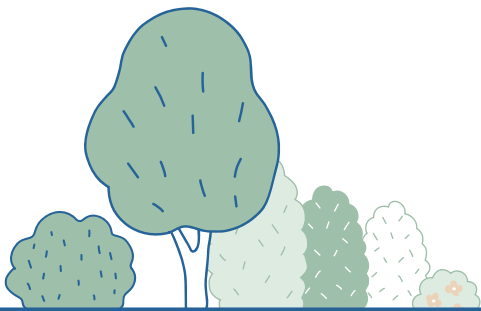
06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안건 작성

1.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작성 방법 062
2.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요약서 작성(예시) 066
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작성(예시) 067
4. 도시공원위원회 설명자료 작성(방법) 077
5.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별 설명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088



07 참고자료

1. 도시공원위원회 연혁 090
2. 공원조성계획 결정요청 시 주요 검토사항 094
3. 공원계획 수립 및 시공 기록보존 094
4.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095
5.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관련 서식 095
6.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법규 120



01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의 성격 및 직무

2. 구 성

가. 위원

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다. 간사와 서기

01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의 성격 및 직무



가. 성격

- ▶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등 법률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법률 제50조)하는 비상근 위원회임.
- ▶ 위원회 의결만으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의결사항에 대한 결정고시를 통해 법률적 효력을 가짐.

나. 직무와 권한

- ▶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조례 제24조)
- ▶ 안건 심의 상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세척 제12조)

2. 구성



가. 위원

(1) 정 수

- ▶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정수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법률 제50조 및 조례 제25조제1항)

(2) 임명, 위촉 등(조례 제25조 제2항, 제3항)

- ▶ 당연직 : 행정(2)부시장
- ▶ 임명직 : 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정원도시국장)

▶ 위촉직

- 시의원 3명 : 공원녹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의정담당관) 추천을 받아 위촉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지방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함.
- 도시공원, 녹지, 도시계획, 경관, 조경, 산림, 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4명 이내

위원의 인선

- 분야별 관련부서 추천의뢰 및 내부 추천으로 예비 명단 작성
- 예비위원 중에서 경력과 활동을 고려, 인선 순서를 정하여 참여 가능 여부 타진 후 위원선정
 - ※위원의 중복 위촉 위원회 수는 최대 3개 위원회로 제한하되, 시의원은 예외로 함

▶ 해촉

-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례 제25조)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기

▶ 임기 및 장기 연임제한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음. (조례 제25조)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함.

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 당연직 및 선출

-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조례 제25조)

▶ 사임

-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음.

▶ 임기

- 공무원이 아닌 경우 선임된 날부터 2년 (위원의 임기와 같음)
- 공무원인 경우 당해 직 상실 시까지

▶ 직무 및 권한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조례 제26조)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함. (조례 제26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조례 제26조)

다. 간사와 서기

(1) 인 원 (조례 제25조)

- ▶ 간사 : 위원회 주관과장 1명 (공원조성과장)
- ▶ 서기 : 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 (공원디자인팀장)

(2) 선 임 : 별도의 선임절차가 없는 당연직

(3) 직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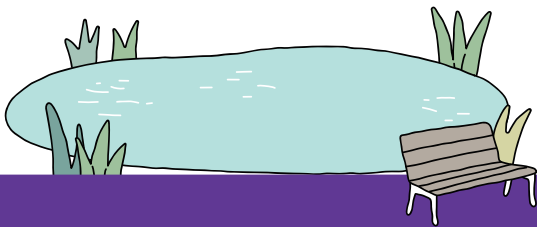
- ▶ 간사 :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 ▶ 서기 : 간사 보좌

(4) 실무에서의 간사 업무

- ▶ 상정 안건목록의 위원장 보고
- ▶ 위원회 소집 통보
 - 위원회 일정한 준비 및 위원장 보고
 - 확정된 일정의 각 위원 및 각 부서에 대한 통지
- ▶ 회의장 설치(서기) 및 위원장의 회의 진행 보조
- ▶ 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및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상정부서에 심의·자문 결과 통보
- ▶ 각종자료의 수집·발간
 - 도시공원위원회 참고자료 발간 등



02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

1. 운영 개요
2. 회의 유형
3. 회의장 설치
4. 위원회 운영
5. 회의록
6. 처리기간 및 안건재상정 금지
7. 회의결과 조치 등
8. 용어의 정리

02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

1. 운영개요



가. 운영근거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4조 내지 제29조

나. 기능

- ▶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 ▶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 ▶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 ▶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2. 회의유형



가. 도시공원위원회

-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로서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며, 통상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라고 한다.
- ▶ 위원회는 매월 1회(매월 셋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소집하되, 상정 안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조례 제27조, 세칙 제2조)
- ▶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세칙 제6조)
-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 제27조)
- ▶ 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
- ▶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 당일의 안건 심의·자문을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 연장 또는 차기 위원회에서의 심의·자문을 결정한다.

나. 소위원회

- ▶ 소위원회는 첫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세칙 제2조)

※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첫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개최하나, 3건 이상 공문으로 안건 접수되면 개최 가능

-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자문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세칙 제16조제1항)

- 개발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자문
-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 공원 내 건축물 설계공모 전 사전자문
-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사항
-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자문

-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미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세칙 제16조제2항)

- 공원조성계획
- 공원조성계획 변경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장조사를 지시한 사항

- ▶ 소위원회에서 조사·자문한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원조성계획의 의제조항이 없는 개발사업과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은 소위원회에서 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세칙 제16조제3항)

3. 회의장 설치



가. 회의장소

- ▶ 위원회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보안이 가능한 회의실을 선정한다.
 - CCTV, 외부연결 스피커, 외부에서의 관람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소

나. 회의의 비공개와 출입자 통제

- ▶ 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세칙 제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명단은 공개하고, 회의록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 제15조 규정에 따른다.
- ▶ 위원회 위원과 간사, 서기, 실무 추진부서 및 전문기관의 당해안건 검토 책임자 외에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 개최 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위원회 운영



가. 회의소집

- ▶ 소집권한 : 위원장(행정2부시장)
- ▶ 소집시기
 - 본위원회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필요시 수시
 - 소위원회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필요시 수시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문서 또는 유선) 하고, 가급적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심의 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 배포 (세칙 제10조)
- ▶ 개의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위원은 대리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세칙 제4조)
 - 위원장, 부위원장
 - 위원
 - 간사 및 서기
 - 실무 추진부서 및 전문기관의 당해안건 검토 책임자
 - 기타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 ▶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의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한다. (세칙 제8조)

나. 안건상정

- ▶ 안건구분 : 심의안건, 자문안건, 보고안건 등
- ▶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개최 10일 이전에 서울특별시에 접수된 것에 한 한다. (세칙 제3조)

- ▶ 안건에는 입안권자가 입안 과정에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주요안건에 대하여는 필요시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고 그 결과를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세칙 제3조)
- ▶ 시장이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칙 제3조)

다. 회의진행

- ▶ 개의 선포 전
 - 개의 정족수(재적위원의 과반수) 확인 후 위원장에게 보고 (간사)
- ▶ 개의 선포 후
 - 위원장의 개의 선언 후 안건의 심의에 앞서 간사는 전회 회의 결과 및 소위원회 자문결과 보고 (세칙 제9조) 후, 금회 위원회 상정안건 목록 보고
 - 상정안건 관련 해당위원의 회피, 기피, 제척 안내 (간사)
 - 위원은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횟수제한 없음)(세칙 제13조)
 -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 중복 및 심의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발언을 중지할 수 있다.
 -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 설명은 간사 및 입안권자가 발표 자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인물로 설명한다. 다만, 현장여건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정안건 관계공무원 또는 설계자가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세칙 제11조)
 -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세칙 제12조)

라. 제척·기피·회피

출처: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 대 상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방 법

- 위원은 상기 사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찬·반 발언을 할 수 없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다. (조례 제27조, 세척 제13조)
- 제 척 :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음.
- 기 피 : 이해관계자가 해당위원의 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
- 회 피 : 위원 본인이 구두 또는 문서로서 위원장에게 신청

▶ 결 정 : 위원장(제척), 위원회 의결(기피), 위원(회피)

◆ 제척·기피·회피의 개념

- ◇ 제척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 ◇ 기피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원회 관여를 배척하는 것
- ◇ 회피 :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

마. 정회·폐회·유회

- ▶ 정회는 회의를 진행하다가 다음의 경우 회의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 회의진행 중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 단, 정족수 미달 시에도 회의는 계속할 수 있으나 의결 할 수는 없음.
 - 회의장의 질서유지, 휴식, 답변준비, 식사시간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폐회는 개의의 반대개념으로 안건의 심의·자문이 끝났을 때 선포한다.
 -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중지 또는 폐회를 선포할 수 있음.
- ▶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의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한다.

5. 회의록



가. 회의록의 의의

- ▶ ‘회의록’은 위원회 회의에 대한 진행과정, 내용, 결과 등의 기록을 말한다.
- ▶ 도시공원위원회 본회의는 속기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며, 소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회의록의 작성

-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시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세칙 제15조)
 - 개의, 폐회 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성명
 - 심의사항
 - 토의 진행상황
 - 위원 발언내용
- ※속기사는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
- ▶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과 심의결과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함께 서명 후 보존하여야 한다. (세칙 제15조)

다. 회의록 공개

- ▶ 시장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세칙 제15조)
- ▶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에는 참석위원 및 발언위원 성명을 "○○○"으로 표기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세칙 제15조)

6. 처리기간 및 안건 재상정 금지



가. 처리기간

- ▶ 위원회는 공원녹지 및 조성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건 처리 기간과 심의 횟수를 단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나. 안건 재상정 금지

- ▶ 위원회 회의결과 부결·부동의 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 단, 부결·부동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대상지 또는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등으로 재상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세칙 제14조)

7. 회의결과 조치 등



가. 수당 등의 지급

- ▶ 위원회 회의에 출석(참석)한 위원 및 속기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시의원 및 시 공무원 제외) (조례 제28조,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제4조)
- ▶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나. 위원에 대한 제재 처분(세칙 제18조)

- ▶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 상 속지한 공원조성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대외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8. 용어의 정리



가. 의결유형 (세칙 제14조)

- ▶ 심 의
 - 원 안 가 결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과 같이 심의 의결
 - 조건부가결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 내역을 수정하거나 의결주문 외의 항목을 부가(추가)하여 심의 의결
 - 재 심 의 : 상정안건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어 안건을 재작성하여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가 필요한 경우
 - 보 류 : 결정요청안에 대한 추가정보나 선결조건(과제)이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한 경우
 - 부 결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 내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 ▶ 자 문 :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자문, 보류, 부동의로 구분
*민간공원 제안 자문은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로 의결함.
- ▶ 보 고 :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결과 또는 수정 보완된 사항으로, 의결유형은 원안수용, 조건부수용, 재보고로 함.

참고사항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의결과 보완(조치결과 제출) 및 조성 계획(변경) 결정 요청 등 후속절차 이행

나. 정족수

- ▶ 회의를 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말하며 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과 의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짐.

다. 동의, 토론, 표결

▶ 동의

-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거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안을 하는 절차
- 동의를 발의되어 성립되면 심사안건과는 별개로 독립된 의제로 의결의 대상이 됨.
- 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됨.
- 동의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함.

▶ 토론

- 안건에 대하여 찬·부의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
- 위원회의 토론은 안건 전체에 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는 대체토론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 주장을 펴는 찬반토론이 있음.
-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이를 회부할 수 없음.

▶ 표결

-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단순히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만 하는 것으로, 그 수를 파악·집계하는 행위로 안건심의의 최종단계임.
- 전원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위원의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찬성·반대 등에 의한 합의 미도출시 표결제 활용
-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
-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결론에 앞서 위원들에게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경우 의결 선포 (전원합의제 원칙)
 - ※표결이후에도 이의제기가 계속 있을 경우는 추가 토론 또는 다시 한 번 표결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의결 선포
- 일단 표시한 찬반 의사는 변경할 수 없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 된 것으로 봄.

◆ 의사봉 사용

회의의 시작과 종료 시 의사봉을 세 차례씩 두드리고 있으나, 의사봉을 세 차례 두드리지 않았다고 하여 회의 진행이나 의결의 법적 효력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음(의결 선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효력 발생)

라. 과반수

- ▶ 과반수는 다수결의 한 형태로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으로,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 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 상태는 포함하지 않음.

예) 29명에 대한 과반수는 15명이고, 12명에 대한 과반수는 7명임.

마. 상 정

- ▶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자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

바. 미료안건

- ▶ 회의가 열리는 당일에 심의·결정 하려고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었거나 또는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의결을 끝내지 못한 안건
- ▶ 미료안건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의·처리



0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및 절차

[1]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1. 본위원회 상정대상
2. 소위원회 자문대상
3. 심의생략 가능한 사항(경미한 변경)

[2]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절차

1.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 절차
2.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협의 및 사업시행 절차
3.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 절차
4. 도시공원 통합관리 자문 절차(소위원회)

0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및 절차

[1]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1. 본위원회 상정대상

구분	대 상	근거
심의	• 공원조성계획 • 도시녹화계획 • 그 밖에 공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공원녹지법 제50조
자문	•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 •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 제안 자문 • 공원세분변경에 대한 사전자문	공원녹지법 제50조 공원녹지법 제16조제4항
소위원회 자문 후 본위원회 심의	• 개발사업 관련 법률 상 도시관리계획 의제조항이 없는 경우의 공원조성계획 • 소공원·어린이공원 조성계획 - 공원조성계획 최초 - 공원조성계획 변경의 내용이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는 변경(건축물 등)	운영세칙 제16조제3항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제3항 운영세칙 제16조제3항

*공원세분변경 자문시기 : 열람공고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전

*공원 및 공공건물 BF(Barrier Free) 인증기준

- ▶ 의무대상 :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적용범위 : 법시행(2021.12.4.) 이후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최초로 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및 이후 조성계획이 전부 변경되는 경우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공원
- ▶ 신청시기 : ① 예비인증 : 인·허가 단계 ② 본인증 : 준공 단계 *2회

2. 소위원회 자문대상

대 상	근 거
• 개발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자문 • 소공원·어린이공원 조성계획 • 공원 내 건축물 설계공모 전 사전자문 •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사항 •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자문 •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자문(시민여가활용시설등)	운영세칙 제16조 및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3호(2019.6.10.) 도시공원 통합관리 지침(2024.5.14.)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의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자문) 실시 (市 주거정비과-955, '24.1.19.)

- 통합심의가 아닌 경우 : 단일분야(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시행

3. 심의 생략이 가능한 사항(경미한 변경)

대 상	근 거
공원조성계획의 변경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및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아래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공원 시설 부지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변경되는 시설부지 면적의 규모가 3만㎡ 이하인 경우만 해당)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제3항
•휴게소, 긴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3조
•이미 허가된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폐지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함.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단, 이 경우에는 시보에 게재)	도시공원 조례 제4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선행한 후 공원조성계획대로 설치하여야 함.

※공원조성계획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 변경이 포함된 경우는 재열람 공고 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하여야 함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고자 할 때, 반영 내용이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는 재열람 공고 후 고시 하여야 함 (국토계획법 제28조 제4항)

[2]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절차



1.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 절차

업무처리절차	업무 내용	관련 법규
① 조성계획(안) 수립 (심의요구부서의장)	-- 공원녹지기본계획 또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조성계획(안) 반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1 ▼ GB관리계획 승인 등 (심의요구부서의 장)	GB관리계획 승인(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② ▼ 주민의견청취 및 유관기관·부서 협의 (심의요구부서의 장)	-- 1. 각각 공고(14일 이상) - 시의 공보나 2이상의 일반 일간신문 - 입안하는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시 포함) - 국토계획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유관부서 일괄협의 및 조치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③ ▼ 공원조성계획 입안 (심의요구부서의 장)	-- 심의(안) 및 설명PPT자료 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④ ▼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심의)	--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부결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⑤ ▼ 공원조성계획결정 (최초·변경)요청	-- 조성계획(변경) 결정 요청 (관련도서 첨부)	
⑥ ▼ 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최초) -시장-	-- 결정고시(시보게재) 및 공람 관계기관·부서에 결정내용 통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⑦ ▼ 지형도면 작성·고시 - 시장 -	-- 공보게재, 결과보고, 유관기관·부서에 통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⑧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작성 및 공람공고	-- 1. GB의 경우 고시전 행위허가 2.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람공고 3. 유관부서 일괄협의 및 조치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2조
⑨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실시계획 고시	-- 공보게재, 결과보고, 유관기관·부서에 통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9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⑩ ▼ 사 업 시 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공사완료 공고	유관기관·부서 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2.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협의 및 사업시행 절차

업무처리절차	업 무 내 용	관 련 법 규
① 중복결정 기본계획(방침) 수립 (심의요구부서의 장)	공원내 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에 대한 기본계획(방침) 수립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6호(2020.12.8.) - 시설계획과
② ▼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자문	지하주차장, 저류시설 등 공원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복결정에 대한 자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6호(2020.12.8.) - 시설계획과
③ ▼ 도시계획 입안 (심의요구부서의 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④ ▼ 주민의견청취 및 유관기관·부서 협의	1. 각각 공고(14일 이상) - 시의 공보나 2이상의 일반 일간신문 - 입안하는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시 포함) - 국토계획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유관부서 일괄협의 및 조치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⑤ ▼ 의회 의견 청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⑥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 의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⑦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 면 작성고시	-- 결정고시(시보게재) 및 공람 관계기관·부서에 결정내용 통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⑧ ▼ 조성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이후 절차 이행		
⑧ 조성계획(안) 수립 (심의요구부서의장)	-- 공원녹지기본계획 또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조성계획(안) 반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⑨ ▼ 주민의견청취 및 유관기관·부서 협의 (심의요구부서의 장)	-- 1. 각각 공고(14일 이상) - 시의 공보나 2이상의 일반 일간신문 - 입안하는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시 포함) - 국토계획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유관부서 일괄협의 및 조치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⑩ ▼ 공원조성계획 입안 (심의요구부서의 장)	-- 심의(안) 및 설명PPT자료 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⑪ ▼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심의)	--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부결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3.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 절차

(사업시행 면적 1만㎡이상, 도시공원조례 제5조 제3항)

업무처리절차		관련 법 규
공원조성계획(안)작성 및 제안	민간공원추진자→구청장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공원조성계획 적정성 검토	구청장 등 (입안권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주민설명회 개최 및 조치(필요시)	구청장 등 (입안권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구청장 등 → 시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자문결과 및 수용여부 결정	자문결과 통보 (시→구) 수용여부 통보(구→제안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의2 60일 이내 제안자에게 통보 (단, 행정기관·부서간 협의기간 제외)
★ 수용되어 입안 시		
공원조성계획(안) 제출 (자문결과반영)	민간공원추진자→ 구청장 등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31조
공원조성계획(안) 열람공고	유관기관(부서)협의 (관련도서 첨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2항, 시행규칙 제8조
공원조성계획(안) 심의 요청 (열람공고 및 협의의견 조치후)	구청장 등 → 시장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 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시 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치구송부/일반열람	시 장 → 구청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관련도서 첨부)	민간사업자 → 구청장 등 (공원관리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시행규칙 제15조
실시계획 도서검토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사업시행자 등 지정포함)	유관기관(부서)협의 (관련도서 첨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2조, 시행령 제99조 일간신문 및 공보에 14일 이상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구청장 등 (공원관리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사업시행자	국토법 제95조, 제96조, 공원법 제19조
사업(공사)완료 공고	구청장 등 (공원관리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시행령 제102조, 시행규칙 제17조

4. 도시공원 통합관리 자문절차(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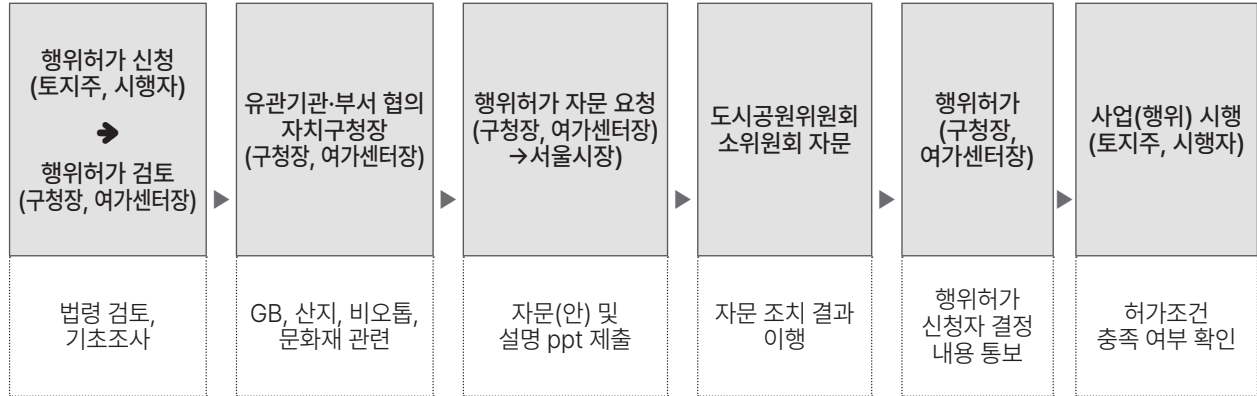
4-1. 통합관리 도서가 작성된 경우(시와 별도 협의하여 추진)

도시공원 통합관리 지침 안내(공원조성과-5647(2024.5.14.)호)

업무처리절차	업 무 내 용	관 련 법 규
①		
통합관리(안) 수립 (심의요구부서의장)	상위계획 및 정책/법규 기초조사 주변현황 대상지현황 관리시설현황(시설공원/행위허가) 행위허가 신청개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② ▼		
유관기관·부서 협의 (심의요구부서의장)	유관부서 일괄협의 및 조치계획 - 개발제한구역 관련 - 산지(임야) 관련 - 비오톱 관련 - 문화재 관련	
③ ▼		
통합관리(행위허가) 입안 (심의요구부서의장)	자문(안) 및 설명 PPT자료 제출	
④ ▼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개최(자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⑤ ▼		
도시공원 통합관리 (최초·변경)요청	도시공원 통합관리(변경) 결정 요청 (관련도서 첨부)	
⑥ ▼		
도시공원 통합관리 결정 (변경·최초) -시장-	관계기관·부서에 결정내용 통보	
⑦ ▼		
통합관리 도면 작성·게시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게시(예정) 유관기관, 부서에 통보	
⑧ ▼		
행위허가 (구청장, 여가센터장) -	행위허가 신청자 결정내용 통보	
⑨ ▼		
사업(행위) 시행		

4-2. 통합관리 도서가 없는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추진계획(공원조성과-4999(2024.10.29.)호)





04

공원조성계획 심의기준

[1] 공통사항

1.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2. 공원시설의 종류
3.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4. 공원조성계획 수립 기준
5. 공원 시설물 설치 기준
6. 도시공원시설의 안전 기준
7. 범죄예방을 위한 공원 계획·조성 기준
8.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기준
9. 공원 내 비오톱1등급 토지 개발행위 기준(안)

[2] 공원시설별 설치기준

1. 공원 내 건축물 설치 기준
2.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3. 부적합 배드민턴장 정비 기준
4. 공원 내 게이트볼장 설치관련 정책방향
5. 공원 내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설치기준
6. 맨발산책로 설치 기준
7. 야영장 설치 기준
8. 녹지연결로 설치 기준

※ 참고자료

1.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2.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자문 기준

04 공원조성계획 심의기준

[1] 공통사항



1.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규칙 제6조 별표3

구분		내용	규모	비고
생활권 공원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1,500m ² 이상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1만m ² 이상	
		근린생활권 :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함	1만m ² 이상	
		도보권 :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함	3만m ² 이상	
		도시지역권 :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함	10만m ² 이상	
	광역권 :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함	100만m ² 이상		
주제 공원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10만m ² 이상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1만m ² 이상	

구 분		내 용	규 모	비고
주제 공원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意識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1만m ² 이상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3조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	
	생태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생태 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놀이공원	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제한없음	
	가로공원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제한없음	

2. 공원시설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공원시설 (결정도면 색)	종 류
조경시설 (초록색)	화단·분수·조각·관상용식수대·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휴양시설 (주황색)	가. 휴게소, 긴의자, 야유회장 및 야영장(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다.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말한다.)
유희시설 (분홍색)	그네·미끄럼틀·시소·정글짐·사다리·순환회전차·케도·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발물놀이터·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운동시설 (노란색)	가.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 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다만, 무도학원·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나. 자연체험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풋살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공원시설 (결정도면 색)	종류
교양시설 (하늘색)	가.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도서관 및 독서실 나. 온실 다. 야외극장,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및 과학관 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마.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에 한한다) 및 학생기숙사(「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지원시설로 한정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사.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공립유치원 아.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자. 기념비, 옛무덤, 성터, 옛집,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차.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을 말한다) 및 전시장 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재난·재해 안전체험장 및 생태학습원(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를 포함한다) 타. 민속놀이마당 및 정원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
편익시설 (고동색)	가. 주차장, 매점, 화장실, 우체통·공중전화실·휴게음식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을 포함한다]·일반음식점·약국·수화물예치소·전망대·시계탑·음수장·제과점(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제과점을 포함한다) 및 사진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 나. 유스호스텔 다. 선수 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직매장
공원관리시설 (보라색)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창고·차고·게시판·표지·조명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쓰레기처리장·쓰레기통·수도, 우물, 태양에너지설비(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
도시농업시설 (황토색)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보관창고, 도시텃밭, 도시농업용 온실·온상·퇴비장, 관수 및 급수 시설, 세면장, 농기구 세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

공원시설 (결정도면 색)	종 류
재난관리시설 (빨강색)	재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그 밖의 시설 (다른 시설과 뚜렷한 구분이 가능한 색)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 다. 동물놀이터 라.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에 따른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 마. 무인동력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조종연습장 바. 국제경기장을 활용하는 공익목적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회색)	도로 및 광장

※녹지 및 기타 : 연두색

3.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1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공원의 종류 [시설물/건폐율]	설치 가능 시설
소 공 원 [20%이하/ 5%이내]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유희시설, 운동시설 중 철봉·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교양시설 중 도서관(높이 1층, 면적 33m ² 이하), 편익시설 중 음수장·공중전화실
어린이공원 [60%이하/ 5%이내]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제외),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중 도서관(높이 1층, 면적 33m ² 이하),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할 것) ※2005.12.30.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경로당과 교양시설 중 어린이집은 증축(증축되는 면적은 2005.12.30.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연면적 이하이어야 한다)·재축·개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있음
근린공원 [40%이하/ 20%이하] 1~3만m ² 미만 : 20% 이하 3~10만m ² 미만 : 15% 이하 10만m ² 이상 : 10% 이하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도시농업시설, 별표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동물놀이터, 보훈회관)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역사공원 [제한없음/ 20%이내]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제외)·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조례로 정한 역사시설[서울특별시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시설(향교, 서원, 전통사찰 등)]

공원의 종류 [시설률/건폐율]	설치 가능 시설
문화공원 [제한없음/ 20%이내]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제외)·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
수변공원 [40% 이하/ 20%이내]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제외)·운동시설·편익시설(일반음식점 제외) 및 도시농업시설
묘지공원 [20% 이상/ 2%이내]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사시설
체육공원 [50% 이하/ 20%이하] 3만㎡미만 : 20% 이하 3~10만㎡미만 : 15% 이하 10만㎡ 이상 : 10% 이하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제외)·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그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예술회관으로 한정) 및 편익시설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 이상
도시농업공원 [40% 이하/ 20%이내]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제외)·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
조례로 정한 공원 (생태·놀이·가로) [제한없음/ 20%이내]	조경시설·휴양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별표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동물놀이터, 보훈회관,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 연습장)

▶ 특정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11조)

- 수목원 :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 어린이집·유치원 : 1만㎡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만㎡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가능

- 학생기숙사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공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이라 한다)의 교지(校地)에 있거나 교지에 닿아 있을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것

다. 2012년 12월 12일 현재 가목에 따른 대학의 설립·경영자(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한다)가 해당 도시공원의 부지 중 학생기숙사를 건축할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을 것

- 동물놀이터 :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 **보훈회관** : 30만 m^2 이상의 근린공원 및 조례로 정한 공원
- **유흥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흥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함)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 : 10만 m^2 이상의 도시공원
- **휴게음식점** : 10만 m^2 이상의 도시공원
 - ※다만, 10만 m^2 미만인 도시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가능
- **일반음식점** : 10만 m^2 이상의 도시공원
 - ※다만,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안의 5만 m^2 이상인 도시공원으로서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가능
- **유스호스텔** : 100만 m^2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
- **다음 각 목의 편익시설** :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 m^2 이상의 체육공원
 - 가. 선수 전용숙소 및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 나.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쇼핑센터로서 매장면적(대형마트와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천500 m^2 이하인 시설
- **승마장** : 100만 m^2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 m^2 이상의 체육공원
- **골프장** : 30만 m^2 이상의 근린공원
- **골프연습장** : 10만 m^2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 m^2 이상의 체육공원
 - ※다만, 다른 운동시설과 함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이하 "실내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은 그 면적이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30 m^2 이하이고 해당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원 면적이 10만 m^2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 가능
-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 30만 m^2 이상의 체육공원

4. 공원조성계획 수립 기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 ▶ 도시공원은 인구수와 조성된 공원의 위치 및 공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 ▶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인접해 있는 공원의 위치를 감안하는 등 광역적인 측면도 고려한다. 광역적 측면에서의 공원조성은 연결녹지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 도시공원의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이용대상자인 주민의 성별, 연령, 선호사항 등을 주민의식조사 또는 인터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 ▶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공원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개발 목표와 방향이 달라야 하며, 각 공원이 가져야 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계획 수립한다. 또한, 각각의 공원이 갖는 기능에 따른 시설물과 동선 등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 ▶ 인근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공원의 경우 지역주민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 ▶ 공원시설부지는 가능한 생태적 기능(자연순환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성한다.
- ▶ 도시공원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수질, 토양, 동·식물과 같은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공원조성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저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녹지자연도 7등급 중 과도하게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습지보호구역 등은 가능한 시설물의 설치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 절·성토를 최소화하는 등 본래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수질 및 유로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당 하천 또는 수로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 ▶ 공원조성에 따른 주변 교통, 소음, 주차문제 등에 대한 영향과 공원 조성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를 조사하여 환경 또는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되도록 한다.
- ▶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재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 ▶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5. 공원 시설물 설치 기준

서울시 공원시설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2011.03.08.)

- ▶ 목재, 흙, 전돌, 자연 석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하고, 광택있는 스테인리스 및 철재 사용 자제 (철재를 불가피하게 사용 시 자연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 ▶ 색채선정은 공원과 조화되는 서울기와진회색 계열 적용을 권장하며, 현란한 원색은 피하고 공원과 자연경관의 배경색채로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선택(저채도로 명도는 주변과 비슷하게 선정)
- ▶ 포장관련 시설(보행로, 산책로)은
 - 노약자와 장애인을 우선으로 보차도 평탄화 및 단차 최소화로 걷기 편한 보행로 조성
 - 보행로와 식재구간의 경계석을 가능한 없애 전체적인 공원경관 연결성 확보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사용을 자제하고 투수기능의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
 -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다양한 패턴 사용을 자제하고, 기능위주의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 ▶ 배수시설(배수로, 맨홀)은
 -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자연 친화적인 재료 사용(목재 권장)
 - 불가피한 철재사용의 경우 무광의 회색계열 표면가공을 함.
 - 맨홀은 보행로 및 산책로와 연속성을 이루도록 디자인 및 자재 선택

▶ 조경시설물(벤치, 파고라, 헨스 등)은

- 크기가 너무 과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선정하고 신체와 접촉하는 시설의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
- 벤치 및 파고라는 이용객 동선과 이용행태에 따라 장소 선정 유의
- 공원등은 빛공해 방지를 위해 컷오프형 방식 권장

6. 도시공원시설의 안전 기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 관한 지침

- ▶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부지의 안과 밖에서 도시공원 부지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배치한다.
- ▶ 유흥시설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시설이어야 하며, 이용동선·유흥시설의 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공간·추락공간 및 여유허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 공원시설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계획·유지관리·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장애발견, 제거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보수 등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안전점검은 유지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으로써 초기 설치 및 작동과 관련하여 제조·시공자가 행하는 초기점검(시설 설치완료 후 일정기간 시설 설치업자가 하는 점검), 공원관리자가 행하는 일상점검(관리자가 일상적으로 하는 점검) 및 전문기술자에 의한 정기점검(전문기술자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정밀점검(필요시 관리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전문기술자가 행하는 점검)으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 ▶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보수 등의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수리·개량·철거·갱신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개량·철거·갱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 사고예방이나 사고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관리자나 공원관리청의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 ▶ 사고발생 후 대응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공원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후조치, 사고원인 조사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 사고에 대하여는 발생 상황의 기록과 분석을 행하고, 사고의 재발방지, 시설물의 개선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 ▶ 동일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발생 상황 등의 정보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이나 공원시설물의 관계자가 공유·교환하도록 한다.
- ▶ 설치된 시설물의 이용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 ▶ 도시공원은 청소, 시설물 보수 등과 같은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며, 화단, 수목 등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 도시공원 안에서 각종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 후 진행하도록 하고, 행사로 인하여 공원시설 및 녹화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행사 종료 후에는 쓰레기 등에 대한 자체 청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행사 관련 시설물은 즉시 철거하도록 한다.

7. 범죄예방을 위한 공원 계획·조성 기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 기준 등 관한 지침

- ▶ 도시공원을 계획·조성·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자연적 감시 : 내·외부에서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계획·조성·관리
 - 접근 통제 : 이용자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
 - 영역성 강화 : 공적인 장소임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배치
 - 활용성 증대 :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배치
 - 유지관리 : 안전한 공원 환경의 지속적 유지를 고려한 자재선정 및 디자인 적용과 운영·관리
- ▶ 도시공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계획,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 공원계획은 식재수목이나 시설물이 이용자의 시야를 가능한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 한다.
 - 공원의 출입구는 도로나 주변의 건물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용자의 동선을 명료하게 하여 이용성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 공원의 경계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난간이나 투시형 펜스를 사용하고, 생울타리로 공원경계를 구분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수목은 교목과 관목이 주변의 시야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목성장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관리하여야 한다.
 - 공원에 설치하는 안내시설물은 통행이 잦은 공원의 출입구 주변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설치장소의 주변 환경요소와 시각적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목은 항상 정돈·관리되어야 하고 이용자에게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숨을 수 있는 공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배식하여야 한다.
 -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에서 가까운 장소 등 주위로부터 시야가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 출입구는 다른 공공장소에서 잘 보이도록 배치하며, 화장실 입구 부근 및 내부는 사람의 얼굴 행동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관리사무소는 이용자의 행위를 감시하기에 적절한 공원출입구 등에 배치하고 감시가 용이한 디자인을 고려하도록 한다.
 - 공원의 의자 등 휴게시설은 가로등·보행등이 설치되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사회적 일탈행위 등의 예방 및 교통약자를 위한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의자, 쓰레기통, 표지판 등 공원시설물은 파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 조명은 도시공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배치를 하되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여 안전감을 높여야 한다.
 - 산책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 수목이나 공원시설물 등에 의하여 조명시설이 가리지 않도록 배치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 공원입구, 통로, 주차장, 표지판, 주요활동구역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조명시설은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파손 예방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공원의 입구 등 감시의 기능이 필요한 위치와 공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위치에 설치하고, 야간활용을 위하여 조명도 설치하여야 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지 않은 도시공원에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등에 관리사무소나 파출소 등과 연결된 안전벨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8.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기준

서울시 BF 조성 가이드라인(2024.02.)

서울시 무장애 숲길 매뉴얼(2023.12)

- ▶ 무장애를 위한 계획이 다른 누군가의 또 다른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새로운 BF시설 추가보다는 기존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우선 접근
 - 무장애를 이유로 모든 시설과 공간을 정비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기존 기능성과 경관성을 유지하면서 부분적 개선 또는 차선택 고려
 - 무장애화를 위해 공원 기능성과 경관성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무리한 개선보다는 BF루트 제공과 BF친화도 제시를 통해 장애인의 이용 유도
- ▶ 공원이용에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제외하고 장애인 전용 공간과 시설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
 - 신규 화장실은 다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화장실은 구조변경과 재건축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목적화장실로 변경
 - 공원 내 모든 이용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통합시설로 계획하고, 통합시설 도입이 한정적인 경우, 교통약자를 배려하도록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 무장애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 단차 제거 시 경사로, 수직리프트, 승강기처럼 다양한 방법을 도출하고, 공사비 및 효율성, 단계적 개발 등을 고려하여 최적안 선택
 - 현실적으로 물리적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인적서비스 활용으로 장애물 극복
 - 비용과 기술의 문제일 뿐 무장애 실현이 불가능한 공원은 없으므로, 무장애공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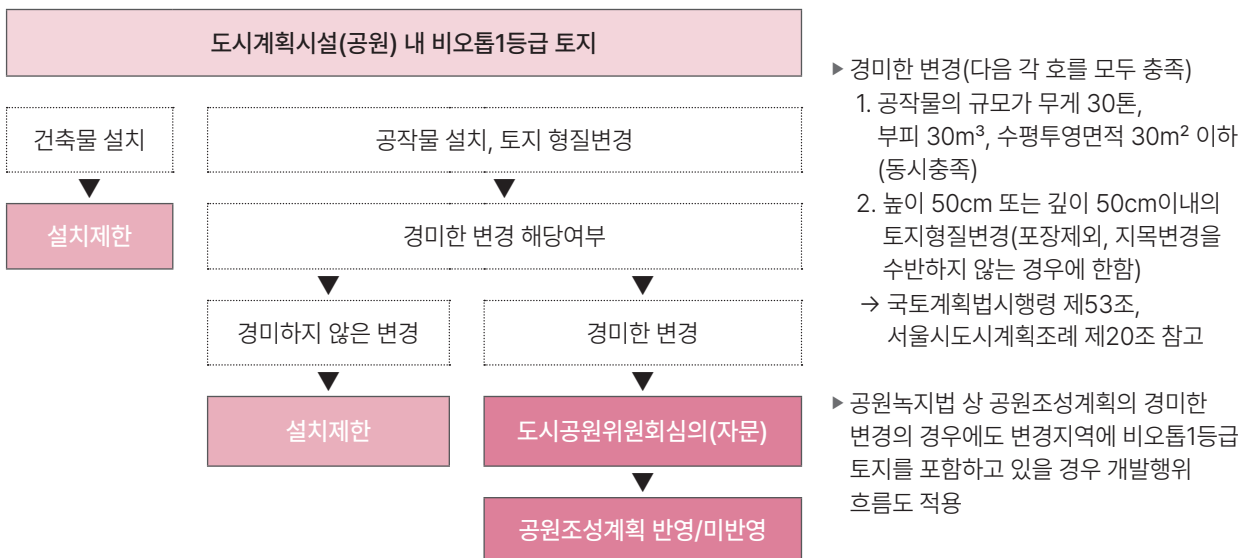
▶ 기존 장애물 제거 방법

- 장애요소는 【 접근로 > 공원입구 > 내부보행로 > 이용공간 및 시설 > 공원건물 】로 이어지는 이용자의 경험경로를 따라 검증
- BF Zone 내의 산책로와 공원시설을 이용하면서 발견되는 장애요소들을 없애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BF인증 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방향 도출
- BF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의 이용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개선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9. 공원 내 비오톱1등급 토지 개발행위 기준(안)

공원내 건축물(공작물) 설치에 관한 관리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204호 2020.07.17.]

■ 개발행위 흐름도



※단, 공익목적의 실현이 녹지의 보전보다 그 이익이 월등히 커 개발행위가 불가피할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결정

■ 상정안건 검토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기준

- ▶ 기본원칙 : 공원 내 비오톱1등급 토지는 원형 그대로 보전한다.
- ▶ 일반원칙
 - 자연생태 및 경관의 보전적성이 높은 지역은 입안을 제한한다.
 -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불가피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는 경우 인근 유사공간(비오톱1등급지)의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등 산림의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 생태축·녹지축의 연속성 및 기존 스카이라인을 보전하고, 설치되는 시설물과 주변경관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한다.
- 절·성토를 최소화하는 등 본래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 공원시설별 설치기준



1. 건축물 설치 기준

■ 공원 내 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한 건축물 도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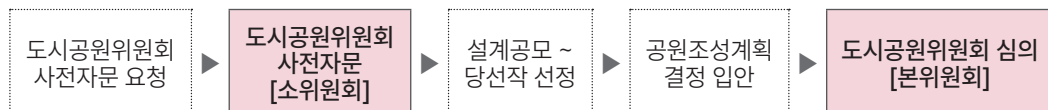
공원 내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1호('19.1.2.)]

I. 능력이 검증된 자의 설계참여 활성화(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

① 공원 내 모든 건축물은 설계공모 권장

설계공모 절차

- ▶ 자문대상 : 설계공모 계획이 있는 공원 내 공공건축물
- ▶ 자문시기 : 설계공모 시행 전(공공건축심의 해당시 사전자문 우선 시행)
- ▶ 추진절차



*공원 내 건축물 설계공모 시 도시공원위원회 사전자문 운영계획(공원조성과-3444호, 2019.03.22.)

*신축에 따른 녹지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 입지타당성 등 공원조성계획 반영 여부에 대하여 시와 사전협의 필요

② 능력이 검증된 자와 1인 수의계약 활성화

-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가
-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 서울시가 위촉한 공공건축가
- 사후 이용자 평가에서 우수한 건축물로 인정된 건축물의 설계자 등
-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능력이 검증된 자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③ 1억원 이하 건축 설계는 가급적 신진건축가 지명공모 권장

II. 공공건축가 사전자문 시행(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자문대상 : 공원 내 모든 공공건축물
(공공건축가 등 1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에 참여한 안건은 제외)
- 자문시기 :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단계
- 공공건축가 추천 : 서울시 미래공간담당관으로 추천의뢰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개선에 따른 활용안내 (미래공간담당관-1937(2025.2.23.)호)
- 자문방법 : 현장방문 및 대면자문(일회성 및 서면자문 지양)
➡ 공공건축가 사전자문 후 자문의견 및 반영결과를 도시공원위원회 설명자료(ppt)에 첨부

III. 도시공원위원회 상정 시 절차이행 검증

- 상정 안건조서에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 확인표' 작성

구 분		해당사항	비고
I	① 설계공모 당선작	√	
	② 능력이 검증된 자와 수의계약	1) 설계공모에 당선된 이력이 있는 건축가	
		2)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3) 수의계약일 기준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위촉된 자	
		4) 사후 이용자평가에서 우수한 건물로 인정된 건축물의 설계자 등	
		5)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능력이 검증된 자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이 경우 구체적 근거 제시)	
	③ 신진건축가 지명공모(1억원 이하 건축설계)		
II	공공건축가 사전자문(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설명자료(ppt)에 공공건축가 사전자문 시행 결과(자문의견 및 조치결과) 첨부

■ 건축계획 시 주의사항

▶ 근린공원 특정시설률(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예) 면적이 3만㎡, 시설률이 30%인 근린공원에 들어 갈 수 있는 위 시설 면적의 합계는
1,800㎡를 초과할 수 없음(3만㎡ X 30% X 20% = 1,800㎡ 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및 법 제7조 부칙 제1항에 따라 법 개정시행일(2015.12.30.) 전에 공원조성 계획을 입안·결정하여 설치한 도서관 등의 시설은 존치 가능(설치년도 기재)하며, 해당 시설의 변경 시 현행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적합하여야만 가능하고 운동시설 중 건축물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세부 종목간의 변경은 당해 운동시설의 면적 범위 내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가능[국토교통부 도시환경과-017(2009.3.23.)호]

- ▶ **건축물의 높이** : 능선(스카이라인)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4층 이하(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8항) 높이 15m이하(2009년 제6차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결정 사항)로 설치
- ▶ **건축물 내 화장실** : 건물외부에서도 직접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가급적 별도 화장실 건축은 지양할 것
- ▶ **건축물 부설 주차장** : 관련 법규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가급적 건축물 지하로 유도하고, 건축물 지하 외 지역까지 초과 조성 시 지상부는 녹지로 조성 (배수 철저 및 토심 2m 이상 확보)
- ▶ **건축물의 형태·재질 등** :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하고, 필요시 옥상 녹화, 벽면녹화 등 반영 권장

■ 건축 대상지 선정 시 유의사항

▶ 설치 불가 지역

- ① 우리시 지정 관리 야생 동·식물 서식지 및 생태보전지역[‘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0조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및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② 보호수·보호수림 지정지 및 등록된 수목·수림지[‘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2010.3.10. 이후]
- ③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비오톱유형)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보호 가치가 우선시 되는 비오톱)으로 지정된 부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설치 지양 지역

- ①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 상 서울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20% 이상인 토지와 평균경사도 12도 이상인 토지(「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관련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공통분야 중 녹지지역 적용)
- ② 동일 기능 건축물이 반경 2km이내에 설치될 경우(우리시 평균 이상으로 있을 때에 한함)
- ③ 주요 간선도로(폭 25m이상인 도로 또는 철도변)에서 설치 대상 건축물을 보았을 때 스카이라인이 저해되는 경우

▶ 공원내 건축물 및 구조물 설치 제한

- ① 수목이 이미 생육하고 있는 산지형 공원 내 바닥면적 330m² 이상의 건축물 및 구조물
- ② 다만, 공원 내 설치가 부득이하여 공원녹지관리부서(공원조성과 등)과 사전 협의하여 우리시의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시공원 내 건축물 경관심의

- ▶ 경관법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도시공원 내 건축물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가 경관위원회 기능 수행 (서울시 경관조례 제25조 2항 6호)
-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서울시 경관조례 제24조)
 1. 경관지구(시가지·특화경관지구를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공공건축사업 추진절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조례 제22조의2

① 공공건축 건축기획

- 수행대상 : 모든 공공건축 사업
- 수행주체 : 발주청 (공공기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수행 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면제 대상
- 수행시기 : 사업계획 수립 시
- 업무내용 :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2항

②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검토대상 : 설계비 추정 가격 1억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
- 신청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
 - *신청 기준일로부터 30일내 회신 (미비서류, 자료보완 기간 제외)
- 제출서류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공공건축사업계획서, 과업내용서(초안), 설계용역비 내역서(초안), 기타 자료
- 검토내용 : 건축기획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검토

③ 공공건축심의

- 심의대상 : 설계비 추정 가격 5천만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
- 신청시기 : 설계용역 입찰공고(설계공모 포함) 전
공원 내 건축물 설계공모 시 공공건축심의 전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 이행하고, 이후 공원조성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제출서류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심의,자문) 신청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상정용 PPT, 과업내용서, 설계지침서, 사전검토 의견 조치사항(해당 시)
- 심의내용 : 사전검토의견 반영여부, 설계지침서·과업내용서 적정성 등

< 공공건축사업 추진절차 >

법조항	제22조의2	제23조		제22조의3	제21조
업무 내용	건축기획 공공건축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검토	기획보완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	공공건축심의 설계지침서·과업지시서 적정성 사전검토 의견 반영여부	설계공모 설계발주 설계지침서 과업내용서
수행 주체	발주청 (공공기관)	공공건축 지원센터 *설계비 추정 1억원이상	공공기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설계비 추정 5천만원 이상	공공기관

2.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소변기 위쪽에는 이용편의를 위한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 ▶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 ▶ 대변기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 대·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의 설치, 상·하수도시설의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 대변기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춰 둘 수 있다.
- ▶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대변기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연면적 66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인 경우 제외
- ▶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공원위원회 주요 심의의견>

- ▶ 남·녀 일반화장실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지양 (장애인 화장실 입구는 외부에서 출입가능 하도록 설치)
- ▶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권장

3. 부적합 배드민턴장 정비 기준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131호('11.8.7)

가. 기준마련 배경

- ▶ 공원(임야형) 내 배드민턴장 중 약 45%가 부적합시설이고 바람막이 등으로 인해 경관저해, 안전 사고 우려와 클럽화 됨에 따라 이용자 간 갈등 및 지역의 압력단체화
- ▶ 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모·비용·입지여건 등에 대한 논란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 방침으로 정비기준 마련

나. 실내배드민턴장 정비 기준

- ▶ 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공원 내 건축물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
- ▶ 사유지 또는 구유지 등 보상비 추가 부담이 없는 지역 우선 선정
- ▶ 건립 대상지로부터 이용반경 500m 이내 시설을 통·폐합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에 이용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함.
- ▶ 배드민턴장 설치 면수는 클럽단위 이용보다는 다중이용을 전제로 하므로 통·폐합 면수의 70% 이하의 규모로 설치(최대 8면 이하)
- ▶ 도보 이용자를 목표로 계획하고 부대시설 규모 최소화
- ▶ 신재생에너지 도입(태양열, 지열)으로 에너지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 ▶ 건축비용은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중 배드민턴장 기준 이하로 하고 경량형 모델 제시를 통한 저비용형으로 계획

4. 공원 내 게이트볼장 설치관련 정책방향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2022.08.01.)

- ▶ 공원 내 게이트볼장은 실외게이트볼장을 원칙으로함

<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관련 정책방향>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2016.07.28.)
▶ 게이트볼장은 야외의 열린 공간에서 즐기는 스포츠임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지붕 없이 오픈된 운동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원 내 게이트볼장 상부에 막구조물 설치 시 구조물 면적은 최소 600m² 이상으로 공원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도심 속 공원의 생태적 기능 및 볼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열린 공간인 공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원 내 게이트볼장을 포함한 공원시설은 개방된 오픈페이스(open space)로 유지 ▶ 공원 내 게이트볼장 상부 막구조(비가림막) 설치 허용 시 예상 문제점 • 특정 이용자만의 점유공간이 되어 집단화(사유화) 될 경우 및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잠재적 민원 발생 우려 • 향후 게이트볼장 이외의 공원 내 다른 운동시설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현행 유지)	

- ▶ 단, 아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실내게이트볼장 허용
 - 기존 게이트볼장을 통·폐합하여 설치
 - 보도권 이용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부대시설(주차장 등) 규모 최소화
 - 공원 내 건축물 입지기준 준용
 - 건축비용은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중 실내배드민턴장 기준(경량) 적용
 -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예약서비스 시스템 등으로 운영
- ▶ 관련법령 및 국토부지침(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어린이공원, 소공원, 묘지공원, 조례로 정한 공원(생태, 놀이, 가로) 설치 제외

5. 공공미술(동상·기념비·조형물 등) 설치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공원 내 공공미술(동상·기념비·조형물 등) 설치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전에 공공미술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
 - 공공미술이란 공원·도로·녹지대 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등의 미술작품

6. 공원 내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기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2022.10.18.)

- ▶ 조성대상 : 5천m² 이상 도시공원
- ▶ 공원시설의 종류 : 유흥시설
- ▶ 기본방향
 - '지붕있는 바깥놀이터'로서 사계절 놀이, 만남, 레크레이션이 가능한 공원 내 어린이 거점공간으로 조성
 - 놀이공간은 어린이의 상상력, 창의성,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조성
 - 도심 내 오픈스페이스 보존, 공원 환경과의 조화성, 경관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 수립
 - 실내에서 공원 자연환경(숲, 하늘, 햇빛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개방감을 주는 건축 및 시설 반영
 - 건축물의 위치는 공원의 중심이 아닌 이용자의 접근, 전체적인 공원시설의 이용흐름 등을 고려하고 소음이 적은 곳에 배치
 - 건축물 주변에 실내외 전이공간(틔마루, 처마, 필로티 등)을 확보하여 시설 이용자와 일반 공원 이용자가 유동적,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 조성
 - 화장실, 영유아시설, 수유실 등은 주 이용 연령군, 이용정원 및 BF 인증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되, 공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개방 검토
 - 공원 접근성, 이용유형 등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계획 반영
- ▶ 도입규모 : 연면적 250 ~ 500m² 미만(권장)
- ▶ 천정높이 : 3 ~ 4m 이상(권장)
- ▶ 운영시간 : 화 ~ 일요일, 09시 ~ 18시 *여성가족실 가이드라인 기준 준용
- ▶ 이용대상 : 0 ~ 만9세(권장)
- ▶ 이 용 료 : 무료(권장) *여성가족실, 자치구 여건에 따라 조정
- ▶ 공간구분 : 놀이공간 : 관리·지원공간 = 80 : 20(권장)
- ▶ 놀이시설의 종류 : 어린이놀이시설(기구) 설치(권장)
- ▶ 공원 내 자연물, 숲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실외 공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 ▶ 관리인력 : 필수 2명(상근)

7. 맨발산책로 설치 기준

서울시 맨발산책로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2024.10.)

① 설치장소

- ▶ 기존 산책로 중 약간의 보완으로 맨발길로 이용 가능한 구간을 우선 선정
- ▶ 기존 공원(지형, 수목 등) 및 시설 훼손이 최소화 되는 곳
- ▶ 상부에 교목 수관층이 발달해 그늘진 곳
 - 맨발길의 수분 증발 저감, 강우시 토사유실 및 패임에 대한 완충 작용 등

- 유지관리에 부담이 되거나 밤나무 등 가시나 이물질이 많은 지역은 제외
- 필요시, 등나무, 덩굴 등 자연식생을 활용한 그늘 터널 형태로 설치
- 임야내 경관을 저해하는 인위적 비닐하우스 등 설치 지양
- ▶ 경사도 5%이하 평탄한 지역에 설치
 - 경사가 급한 지역은 우천시 토양유실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단, 평탄지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지형변경은 금지
 - 평탄한 구간이 짧아 서로 연결하여 맨발길을 조성할 경우, 가로목(모서리 라운딩 처리)을 설치하여 계단 형태로 조성
- ▶ 주택가와 인접(20m 이내)한 지역에는 설치 금지
 - 단, 인접 주택의 동의를 얻은 경우 협의 후 설치

㉔ 조성방법

- ▶ (기층) 맨발걷기는 발바닥이 자연지반에 접지해야 하므로, 하부에 부직포, 기초 콘크리트층 등 인공적인 시설은 설치 제외
- ▶ (노면) 생석회 섞어서 만든 재료 또는 인공적으로 시멘트 등과 섞어서 만든 경화황토, 경화흙은 제외
- ▶ (포설) 황토, 혼합토(황토+마사토) 포설 시 두께 5cm 이상(5~10cm) 처리
 - 황토(100%) 포설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마사토 등을 혼합 포설 권장
(비율은 마사토6 : 황토4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
- ▶ (폭원) 맨발길 폭원은 1.2m이상이 되도록 하고, 양방향 교행은 폭1.8m이상이 되도록 권장
- ▶ (길이) 기존 산책로를 활용시 기존 길이(연장)를 가급적 유지
- ▶ (배수) 표면배수를 원칙으로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맨발길 횡단 및 종단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를 용이하게 할 것
- ▶ (다짐) 다짐을 철저히 하여, 우수로 인한 토사유실을 최소화 할 것
 - 콤팩트보다는 무게감 있는 로라 다짐을 권장
 - 시간을 두고 수차례 다짐을 실시하여,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할 것
- ▶ (경계) 노면의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야자섬유로프(φ10cm이상), 둥근목재 등으로 외곽 경계 처리를 철저히 하고, 화강석 경계석은 지양
 - 경계를 따라 세굴되지 않도록 횡단배수로 또는 식생매트 등으로 마감 처리
- ▶ (식생) 맨발길 주변에는 매력가든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볼거리를 제공
 - 상부 수관층이 발달한 장소에 매력가든 조성시 그늘에 강한 수종(화관목 등)으로 식재
 - 맨발길 가장자리에는 다양한 화관목, 사초 등을 밀식하거나, 맥문동, 줄사철 등을 식재하여 토양유실 방지 및 정서적 안정과 치유에 기여

- ▶ (마무리) 함몰이나 세굴이 생기지 않도록 노면관리를 철저히 하고, 바닥에이물질, 불순물 등은 즉시 제거

③ 부대시설

- ▶ (안내판) 맨발길 출입구에 시민들이 맨발길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 안내판은 이용수칙, 이용기간, 이용방법(일방통행 등) 등 표기
 - *도시공원 안내체계 개선 매뉴얼 준수
 - (관리방법 안내) 이용객 스스로 맨발길 보호 및 관리 유도
 - (이용자 주의 및 에티켓) 발 상처 및 피부질환이 있을 시 이용금지, 파상풍 등 건강을 위한 예방주사 접종 필수, 신발 신고 이용금지 등
 - (세족안내) 세족장이 미설치된 곳은 이용자 스스로 발씻을 물(물통)과 수건 등을 지참하고 세족하는 것을 안내
 - (운영기간) 강우시 운영 금지, 동절기 운영 금지 여부 등
 - (통행방법) 우측 통행 (폭이 좁은 순환식일 경우 일방통행 유도)
 - (동물통제) 반려동물 출입 및 이용 통제(금지)
- ▶ (보관시설) 청소도구, 덮개, 보충용 흙(황토, 마사토) 등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청소도구(함)는 이용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시성이 좋은 곳에 비치(설치) 권장
 - 보충용 흙과 덮개 등은 맨발길 이용객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처리
(덮개는 우천시 노면(흙) 패임, 세굴현상과 낙엽섞임 발생 예방)
- ▶ (휴게시설) 필요시, 보행약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쉴 수 있도록 시(종)점 등에 휴게시설 (등의자, 앉음벽 등) 설치 고려
 - 다른 이용자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포켓식으로 설치
- ▶ (황토체험시설) 황토(100%)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포켓형 황토족욕장, 황토볼장 등의 황토 체험시설을 검토하되, 경관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 규모로 설치
 - 황토체험시설 설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핸드레일 또는 앉음 웬스 등 설치 고려
 - 습식 황토족탕은 수목의 뿌리활동을 방해할수 있으므로 수목 주변에 설치 지양
- ▶ (세족장, 신발장) 편의를 위한 신발장, 세족장은 꼭 필요한 경우, 맨발길 입구에 1개소 정도만 설치
 - *공원시설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 특히 지형 및 입지상 무리한 경우 수도시설 설치 금지

세 족 장	신 발 장
• 수도꼭지는 버튼형 또는 회전형으로 설치 검토 • 토사로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유의 • 퇴수구 하부는 토사가 침전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	• 신발장 칸 높이는 최소 25cm 이상 •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설치

- ▶ (안전시설) 노약자 이용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발생과 긴급 상황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CCTV, 비상벨 설치 고려
- ▶ (야간조명) 야간에도 운영할 경우, 낮은 높이의 조명(볼라드등) 설치 고려

8. 야영장 설치 기준

▶ 야영장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구분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특례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 미만일 것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 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개별기준	야영지 규모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이상을 확보할 것	차량 1대당 50㎡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시설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진입로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야영장 시설의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야영덕(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 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평행봉·그네·줄구름·배드민턴장·어린이놀이터·놀이형시설·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전기·가스시설	소방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잔불처리시설·재해방지시설·조명시설·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CCTV)·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9. 녹지연결로 설치 기준

서울특별시 단절된 녹지축 연결로 설치·관리방안(20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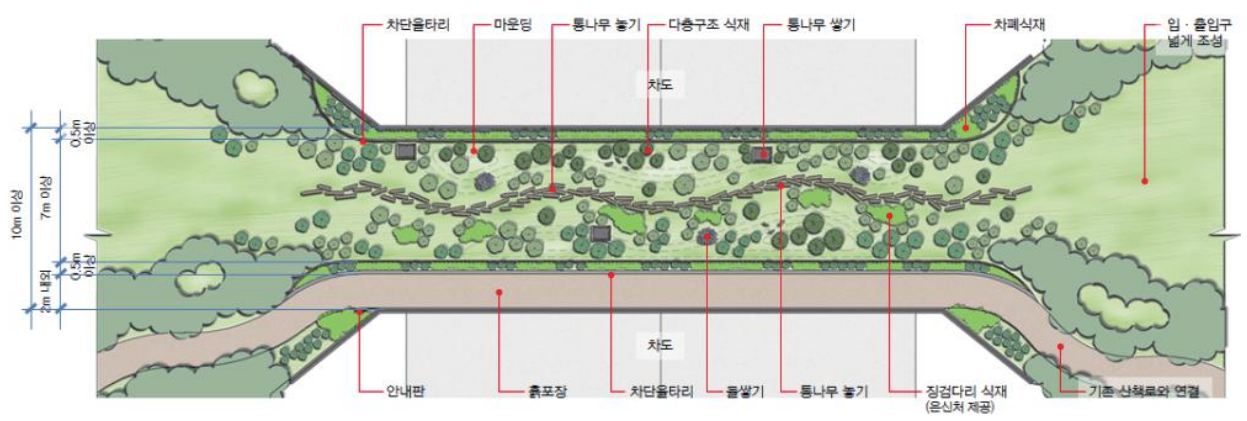
구분	녹지연결로	비고
중앙부 최소폭	- 최소폭 10m 이상 확보 (완충공간(0.5m) + 생물이동로(7m) + 완충공간(0.5m) + 보행로(2m)) - 도시환경 여건을 고려 : 서울과 같은 도시 내 30m 이상의 폭을 갖춘 녹지축 연결로 조성은 어려운 실정임 - 생물이동로 7m 이상 확보 : 「환경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참조 - 보행로 2m 내외 확보 : 보행시 양방향으로 사람이 통행하기에 무리가 없는 정도로 설정 - 생물이동로 양쪽으로 완충공간 확보 폭 0.5m 확보 - 차폐식재 및 차폐휀스 등 설치 - 차도 ↔ 생물이동로 ↔ 보행로 ↔ 차도 (완충 0.5m) (완충 0.5m) (완충 0.0m)	서울시 녹지 연결로의 평균폭원 : 24m
보행로	폭	· 2m 내외 : 보행시 양방향으로 사람이 통행하기에 무리가 없는 정도로 설정
	재료	· 흙 상태의 바닥포장 도입
동선분리	· 성토와 관목층, 야교목층, 교목층의 다층구조 식재를 통해 시각적 차폐를 형성 · 산책로와 동물 이동로는 서로 교차 또는 상충되지 않도록 조성	
입·출구부	· 연결로의 진입부는 인접한 자연지형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경사를 완만하게 조성 · 녹지축 연결로 내부로 물이 흐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입구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경우나 기존 배수구에 덮개가 없는 경우는 배수로 내부에 탈출시설을 설치하고 고사목, 통나무 등의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덮개를 덮음 · 주변 서식지와 연결되도록 주변과 유사한 자생수종을 식재 · 연결로의 입·출구부는 중앙부 폭보다 넓게 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유도 - 단, 연결로 계획 시 현장 여건, 연결로의 구조, 길이와 폭 등 검토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입·출구부와 중앙부의 폭이 같을 수 있음	

구분	녹지연결로	비고						
토양 및 지표면	•연결로 내 식재지의 토심은 식생의 안정적인 성장을 고려하여 90cm이상 확보 ▸ 조경설계기준 제15조 인공지반에서의 식재 토심과 생존 최소토심을 참조하여 산정 •지표면은 양토와 낙엽 등을 이용하여 주변토양과 비슷하게 유지 - 야생동물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며 초본의 발아와 활착이 용이하도록 함							
식재	•높은 밀도의 식재와 물리적 또는 시각적으로 야생동물의 이동이 방해가 되는 식재는 지양 •동물들의 휴식처, 먹이처, 은신처를 위하여 다층구조의 식재 계획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입 식물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지역 자생수종을 도입 •소형 포유류 및 조류의 이동을 위하여 식이식물을 도입 •차량 빛과 소음을 차단하고 보행로와 분리를 위한 차폐식재를 계획 •야생동물을 연결로로 유인하기 위한 유도식재를 계획 •진입부와 내부 식생은 주변과 유사하게 식재							
내·외부 시설물	•연결로의 폭이 30m 이상인 경우 양서·파충류 및 소형포유류의 이동을 위해 주변의 소규모 도랑을 연결로 내부로 유도하거나, •물웅덩이와 나무 그루터기 및 나무 더미를 활용하여 길고 연속적으로 조성 ▸ 물웅덩이의 경우 건습지 개념 •차단벽 - 차량의 불빛과 소음의 영향을 줄이는 차단벽을 녹지축 연결로 양쪽에 설치 - 금속재질의 차단벽 보다는 소음 흡수율이 좋은 나무재질의 차단벽을 설치 - 차단벽 주변에 충분히 차폐식재하여 이중으로 위협요소를 저감							
내·외부 시설물	•소생물 서식처 조성 - 돌무더기, 통나무, 고목, 나무더미 등 도입 - 대산지가 계곡부를 연결할 경우 계류나 습지, 생태연못(우수형)을 도입 •학습 및 이용 안내를 위한 안내판 도입 •시설물 도입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도입 시 모든 시설물의 색상은 눈에 띄지 않는 기와 진회색을 적용 •차단울타리 및 유도울타리 - 녹지축 연결로와 이어지는 도로 구간에 유도울타리를 설치 로드킬 예방 및 연결로로 유도 - 목표종의 크기와 행동유형을 고려하여 재료, 높이, 길이 등을 선정 - 양쪽 녹지와 연결되는 부분부터 차단울타리를 설치 - 산책로와 이격(0.5m 이상)하여 설치, 차단울타리 앞에 관목 등 식재(차폐효과) - 바닥에 최대한 밀착 소형 포유류들이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 - 토양의 침식 등 고려하여 땅 속에 10cm 이상 묻히도록 설치 - 주변의 울타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구조물과 빈틈없이 연결 - 차단 울타리 : 사람 눈높이까지는 불투시형 자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눈높이 이후부터는 투시형 자연재료를 활용한 울타리를 설치 ex) 싸리발, 갈대발 등 - 높이 : 1.0m ~ 1.5m로 조성(토심과 눈높이를 고려하여 설치) - 차단울타리 높이 및 망목규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망목 규격(상하 간격)</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0~150cm</td><td>1cm 이내 불투시 유지</td><td>자연재료 활용 ▸ 싸리발, 갈대발 등</td></tr> </tbody> </table>	구분	망목 규격(상하 간격)	비고	0~150cm	1cm 이내 불투시 유지	자연재료 활용 ▸ 싸리발, 갈대발 등	
구분	망목 규격(상하 간격)	비고						
0~150cm	1cm 이내 불투시 유지	자연재료 활용 ▸ 싸리발, 갈대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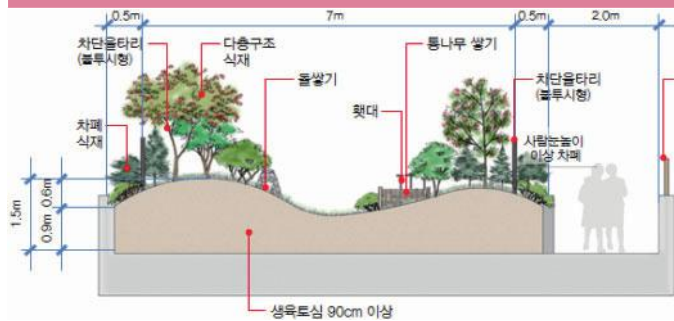
04. 공원조성계획 심의기준

구분	녹지연결로			비고
내·외부 시설물	- 유도울타리 높이 및 망목 규격			
	구분	망목 규격(상하 간격)	비고	
	0~40cm	1cm 이내 : 덧대어 설치	양서·파충류 고려	
	0~150cm	10cm 이내		

녹지연결로 설치 예시도



평면도(예시)



차단울타리(예시)



참고

1.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2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		비고 (자문대상)
❖ 도시계획시설 에 한한다. 다만, 다목은 그러하지 아니함	가. 도로 및 교량		
	나. 철도 및 궤도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해야 함.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어야 함 도로 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노면과의 거리가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공중화장실		
	라. 선착장		
	마. 수도관 및 하수도	지하에 설치해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공동구(관리사무소 포함)	(1) 시설은 지하에 설치해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관리사무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것	
	사. 방재시설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砂防)설비 및 방조설비를 말한다.	
	아. 기상시설	「기상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을 말한다.	
	자. 국가의 안전·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차.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항 제3호가목에 따른 문화재에 한정한다	
	카. 주차장	(1)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중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지평식(地坪式) 주차장만 해당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나)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2) 부대시설로 주차관리를 위한 20m ² 이하의 건축물 설치 가능	○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		비고 (자문대상)
2.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가. 임시건축물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함	(1)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광업을 위한 관리용 가설 건축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 물로서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함)이 200m ²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인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 등이 인정한 때에 한하여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함)이 66m ²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설치 가능
		(2) 사무소 등의 용도별 가설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목적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어야 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면적(연면적)은 200m ²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인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 등이 인정한 때에 한하여 건축면적(연면적)이 66m ² 이하인 가설건축물 설치 가능
		(3) 도시자연공원 구역 관리용 가설건축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건축연면적이 200m ² 이하일 것 (나)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 다만, 관리청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건축물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 및 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존속기간은 1월 이하이며, 연중 6월을 넘지 아니할 것 (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체의 판매행위나 입장료 등의 징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공사용 가설건축물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를 위하여 사업부지 안에 설치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서, 존속 기간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로 하고 사용 후 원상복구 할 것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			비고 (자문대상)
2.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나. 임시공작물	(1)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공작물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 및 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공작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존속기간은 1월 이하이며, 연중 6월을 넘지 아니할 것 (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체의 판매행위나 입장료 등의 징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비상재해용 가설공작물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공작물의 설치에 한할 것	
		(3)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공작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 할 것	
3. 도시민의 여가활용 시설 ❖ 도시기반 시설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 이상, 토지의 형질변 경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함	가.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및 유아숲체험원, 도시숲 및 생활숲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산림욕장의 경우 체육시설은 제외함) (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 및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 해당 지역의 경치·미관·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목조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구조적인 이유로 목조구조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소재로 설치하되, 시설물의 외장은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것 (2)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 층수는 2층 이하로 할 것	○
	나. 골프장		(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할 것 (나) 100만㎡ 이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한할 것	○
	다. 실외체육시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이하 “생활체육시설”이라 함) 중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함) 및 그 부대시설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 이하로 함	○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		비고 (자문대상)
3. 도시민의 여가활용 시설 ❖ 도시기반 시설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 이상, 토지의 형질변 경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함	라. 실내체육시설 *연면적 1,200㎡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시행령제30조 별표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게이트 볼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관리실,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함)만 해당 함 (2) 건축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형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체육관으로 한정 함 (3)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5천㎡ 이하로 함 (4)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마. 도서관	(1)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만 해당 함 (2) 건축물의 연면적은 2천㎡ 이하로 함	○
	바. 청소년 수련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 함	○
	사. 잔디광장, 피크닉장 및 야영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시설· 보조시설(간이시설만 해당)을 설치할 수 있다.	○
4. 체력단련시설	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간이휴게소 및 철봉·평행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할 것 (나) 간이휴게소는 33㎡ 이하로 설치할 것		○
5. 공익시설	가. 전기관련시설	(가) 전봇대·전신·송전선로·변전소·지중변압기, 개폐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 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이하 "태양에너지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로 한정할 것 (나)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다)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송전선로는 공원관리청이 소관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전력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 (마) 태양에너지발전설비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	
	나. 가스관련시설	(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에 한할 것 (나) 가스관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가스정압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구조물로 설치하며 다음의요건 모두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가스정압시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규모가 최소 3만㎡ 이상일 것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		비고 (자문대상)
5. 공익시설	나. 가스관련시설	2) 1)의 경우라도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 3)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가스정압시설은 주위에 철망 혹은 산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외부사람이 허가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할 것 4) 그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하거나 설치된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다. 취수 및 배수시설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라. 지구대·파출소·초소·등대·표지	지구대·파출소의 건축면적은 430m ²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의 면적을 설치할 수 있다.	
	마.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방화용 저수조 및 지하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등	(1) 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등	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할 것
		(2) 전기통신설비 (군용설비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사. 공사의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에 한할 것	
아. 보건소·보건진료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보건진료소만 해당하며,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 이를 포함함	○
자. 수목장림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수목장림만 해당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사목3)에 따라 수목장림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 (2) 수목장림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	비고 (자문대상)
6. 주택· 근린생활시설	취락지구에 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 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용원·미용원·세탁소·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탁구장 및 체육도장만 해당함)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건축물 연면적이 300㎡ 이하인 경우로 한정)·기원·당구장·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사진관·표구점·학원·장 의사·동물병원·목공소·방앗간 및 독서실만 해당함]의 신축 및 상호간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함)이 가능 함. 이 경우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도시자연공원을 포함 함. 이하 이호에서 같다)으로 결정 당시부터 거주한 자는 5년 이상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거주한 자로 한정하며,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상태로 환원하여야 한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토지 1)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주택 2)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된 주택 3)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설치된 주택으로서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기존건축물 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또는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가 발급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
7. 노인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함	○
8. 어린이집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

2.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자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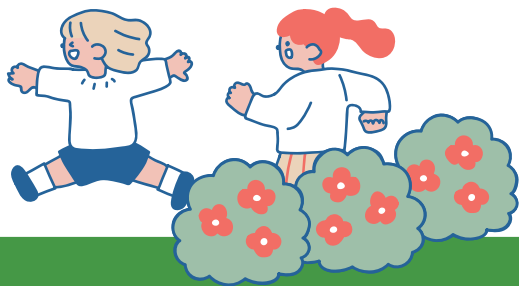
건축물 또는 공작물	자문대상	자문기준	비고
1. 공공용시설	카. 주차장	- 주차대수 20대 이상 추가 - 부대시설 건축물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2.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가.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도시숲 및 생활숲	- 건축물 연면적 100m ² 이상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 토지형질변경 면적 1000m ² 이상	
	나. 골프장	- 토지형질변경 면적1000m ² 이상	
	다. 실외 체육시설	- 건축물 연면적 100m ² 이상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 토지형질변경 면적 1000m ² 이상	
	라. 실내 체육시설	- 건축물 연면적 100m ² 이상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마. 도서관		
	바. 청소년 수련시설	- 건축물 연면적 100m ² 이상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 토지형질변경 면적 1000m ² 이상	
	사. 잔디광장, 피크닉장 및 야영장	- 토지형질변경 면적1000m ² 이상	
3. 체력단련시설	- 무장애길(목재데크길) 설치 1km 이상 - 어린이놀이터	- 단순 등산로, 산책로 정비 제외 - 무장애길(목재데크길) 1km 이상 - 어린이놀이터 형질변경 100m ² 이상	
4. 공익시설	아. 보건소·보건진료소	- 건축물 연면적 100m ² 이상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 토지형질변경 면적 1000m ² 이상	
	자. 수목장림	- 건축물 연면적 100m ² 이상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 토지형질변경 면적 1000m ² 이상	
5. 주택·근린생활시설		- 건축물 연면적 100m ² 이상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 토지형질변경 면적 1000m ² 이상	
6. 노인 복지시설		- 건축물 연면적 100m ² 이상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 토지형질변경 면적 1000m ² 이상	
7. 어린이집 시설		- 건축물 연면적 100m ² 이상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 토지형질변경 면적 1000m ² 이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2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3



05

공원조성계획 심의기준

1.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운영
2. 지하주차장 설치 조건
3. 저류시설 설치 조건

05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전협의 기준

1.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운영



- ▶ 자문대상 : 공원내 타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 ▶ 추진방법 : 중복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의 자문이행
- ▶ 자문시기 :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전
- ▶ 운영부서 : 시설계획과

2. 지하주차장 설치조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2015.12.15.)

- ▶ 일정면적(3,000m²) 이상의 공원으로서 시설의 상호이용에 지장이 없고, 시설물이 노후하여 시민이 용도가 낮거나 주변여건의 변화, 주차수요 급증 등으로 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설치 검토
- ▶ 면적이 협소(3,000m²미만)하거나 진입도로가 협소한 공원, 주요 시설물이 있거나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공원, 수목이나 시설물이 잘 유지 관리되어 있고 시민이용도가 높은 공원 등은 지하주차장 설치 제외
다만, 공원의 입지가 경사면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어, 지하주차장 설치 시 지상과 분리·독립 운영이 가능하며, 공원 본래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적 3,000m²미만 공원도 지하주차장 설치 검토
- ▶ 공원 지하에는 주차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지상부는 현재의 공원상태보다 수준을 향상시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재조성한 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
- ▶ 지하주차시설의 최상단부는 사질양토 등으로 2m이상 충분히 복토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수목생육 및 공원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 주차장의 모든 시설(주차관리실, 엘리베이터용 기계실 등 부대시설 포함)은 지하에 한하여 설치. 단, 지상부 노출이 불가피한 시설(환기구, 주차장 출입구, 피난계단 등)은 공원면적의 잠식 및 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하고, 성토·덩굴류 차폐식재·돌출부위의 환경조각화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요소를 완화시키는 기법 적용
- ▶ 공원이 다중이용시설임을 감안하여 주차장 설치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예 : 출입구 옹벽 낙상, 차량출입시 안전도, 매연 처리 등)

- ▶ 주차장 출입구 설치불가 장소(「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이내의 도로의 부분
- ▶ 지하주차장의 상부 녹지대 우·배수처리 계획 철저히 하여 설치 검토
(자연배수, 지하 바닥에 트랜치를 활용하여 지상으로 배출 등)
- ▶ 접근이 어려운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대는 관수 계획 별도 수립

3. 저류시설 설치조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저류시설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 상시저류시설 :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일정량의 물을 저류하고 강우 시에는 저류지에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

◇ 일시저류시설 : 평상시에는 건조 상태로 유지하고 강우로 인하여 유입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

- ▶ 저류시설은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발휘 할 수 있는 장소에 입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자연 유하(自然流下)가 가능한 곳에 입지하도록 한다.
- ▶ 설치 불가 지역
 - 붕괴위험지역 및 경사가 심한 지역
 - 지표면 아래로 빗물이 침투될 경우 지반의 붕괴가 우려되거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하게 예상되는 지역
 - 오수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 ▶ 공원 내 저류시설부지의 면적비율은 공원 전체면적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 *다만, 공원관리청이 수변공간조성 및 공원시설과의 겸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의 저수지를 저류 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하나의 저류시설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녹지(조경시설과 상시저류시설 포함)의 면적은 해당 저류시설 부지에 대하여 상시저류시설은 60%이상, 일시저류시설은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저류시설부지는 잔디밭·자연학습원·산책로·운동시설 및 광장 등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적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시설로 하여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세부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관리 책임소재(지상-공원, 지하-저류시설)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 공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우 시 저류지의 수위 측정과 이용자의 대피를 알릴 수 있는 사이렌 또는 스피커 등의 감시 및 경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06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안건 작성

1.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작성 방법
2.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요약서 작성(예시)
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작성(예시)
4. 도시공원위원회 설명자료 작성(방법)
5.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별 설명자료 작성

06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안건 작성

1.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작성 방법



가. 심의요청 도서작성

▶ 제출도서의 종류(최초결정, 변경결정)

- 1) 심의요청서
- 2) 심의안건 요약서
- 3) 심의 안건
- 4) 조성계획 조서(①총괄표 ②시설조서 ③도로조서) *한글로 작성
- 5) 조성계획도면
- 6) 건축물, 주요공작물 도면
- 7) 설명(ppt)자료, 심의요청서, 조성계획조서 등의 파일 *이메일 제출
- 8) 공원시설물 설치기준 조사표 (필요 시)

나. 제출도서별 작성요령

(1) 종합적인 사항

▶ 한글파일

- 한글워드프로세서, A4용지, 신명태명조 13 로 작성
 - *용지여백은 상 15, 하 10, 좌·우 18으로 작성
- 표지의 “의안번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은 시 공원조성과에서 부여하니「공란」으로 제출
-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의 ()는 단위 공원명을 기재

▶ 설명자료

- 도면 : PPT(파워포인트 등), A4용지 *도면 작성요령 참조

(2) 심의안건

- ▶ 주문 : 대상공원의 위치, 입안사유 등을 요약하고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심의 의결 주문을 기재
- ▶ 제안이유 : 목적 및 필요성 요약 기재

- ▶ 공원조성계획의 개요
 - 개발목표 및 개발 방향
 - 공원의 현황 : 공원지정과 조성계획의 최초·최종 결정 연월일, 고시번호 기재,
공원면적은 소유형태 별 구분 작성 ※시설결정면적과 일치
 - 주변여건 :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내용 요약
 - 주요(변경)내용 : 최초결정은 주요시설, 변경결정은 주요변경 내용을 기재
(민간공원 및 민자 유치시설은 개소별로 내용요약 기재)
 -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 유관기관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
 - 유관기관·부서 협의 결과
 - 주민의견 청취결과 : 청취기간, 접수의견, 접수의견 검토결과 및 반영 여부
- ▶ 법적 검토 결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
- ▶ 입안부서 의견 : 입안자 의견을 제시
 - 공원조성계획 입안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용역 또는 주민의견 청취(열람공고, 공모내용 등)]
 - 전문기관의 자문결과 : 주요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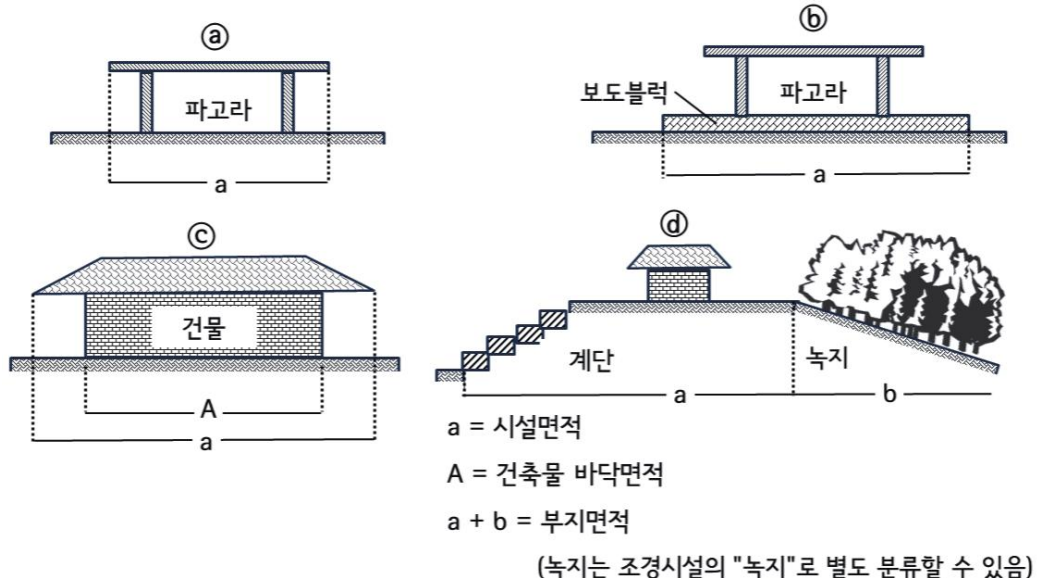
(3) 조성계획 총괄표

- ▶ 공원단위별로 수립·작성되어야 함.
- ▶ 민간공원 등은 해당 범위에 대한 별도의 총괄표 작성

(4) 시설조서

- ▶ 시설명 : 시설별 종류 기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 ▶ 시설명 부호 : 시설별 체계 있는 부호를 부여하고, 도면상 부호와 일치되도록 작성
 - 건축물(경로당, 관리사무소 등) : 아라비아숫자 1, 2...
 - 공작물(그네, 시소, 파고라 등) : 부호 ①, ②...
 - 일반시설(광장, 운동장, 야유회장 등) : 부호 가, 나...
- ▶ 위치 : 동, 지번 기재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건축 연면적



- 구분 방법
- 시설별 부지면적과 시설면적은 대부분 동일함.(그림 ④ 참조)
 - 도로, 광장시설은 동일함.
 - 녹지를 시설의 부지면적에 포함시킬 때는 달라짐.
- 도로, 광장 위 시설은 면적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의 면적은 ()로 표기하고 면적에서 미계상
- 시설면적과 건축면적은 대부분 동일하지 않음. 단, 돔(dome) 형태 등은 동일 할 수 있음.
- 지상이 공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시설(예 : 지하주차장, 저류시설, 변전실 등)은 공원면적과 무관하므로 ()로 면적 표기하고 면적에서 미계상
- 같은 시설은 묶어 계산

[예시]

구 분	시설명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휴양시설	휴게소	가	3개소	1,200	900
		가-1	회현 산 155-130	(400)	(300)
		가-2	회현 산 99-567	(500)	(300)
		가-3	장충 산 299-123	(300)	(300)

▶ 건축물 :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기재하되 면적은 소수점 이하 절사

▶ 공작물

- 이동, 훼손이 쉬운 휴지통, 장의자 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1기로 산정이 가능하며, 단 비교란에 실수량 명기(공원규모 10만m² 이하는 실 수량대로 기수 산정)
- 공작물의 규모는 비교란에 표기(예 : L 5m×B 5m×H 5m)
- 주 공작물 내 부대시설은 기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예 : 파고라 내 야외탁자, 의자 등 파고라 1기로만 산정)

▶ 비 고

- 주차장은 주차대수, 테니스장·배드민턴장은 면수를 기재
- 시설별 계, 소계란에 건축물, 공작물의 증감사항 기재

(5) 도로조서

- ▶ 구분란에 최초 결정은 : '신설' 로 표기하되, 변경 시에는 '당초', '변경', '폐지', '신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광로 대로 중로 소로			40m이상
	1류	35m이상	40m미만
	2류	30 //	35 //
	3류	25 //	30 //
	1류	20 //	25 //
	2류	15 //	20 //
	3류	12 //	15 //
	1류	10 //	12 //
	2류	8 //	10 //
	3류		8 //
	산책로 : 차량통행이 불가한 산책, 등산로		

- 기 능 : 부진입로, 산책로, 등산로 등으로 구분

※도시계획도로와 공원이 중복결정인 경우, 도로는 시설면적에는 ()로 표시하되, 공원도로 기능과 별개인 경우 미 산입시킴으로서 시설률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6) 유의사항

- ▶ 특정기술로 오해할 수 있는 용어 표기 금지

- 특정기술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2.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요약서 작성(예시)



(상 15, 하 10, 좌·우 18 여백)

□ 상정안건 (맑은고딕 진하게 16)

번호	요청기관	안 건 명	주 요 내 용 (맑은고딕 진하게 11)	비고
1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 심 의 - (맑은고딕 11)	<공원현황> (맑은고딕 진하게 11) ○ 위치 : ○○구 ○○동 ○○번지 일대 (맑은고딕 11) ○ 면적 : 604,178.00㎡ ○ 공원결정(최초) : 2009. 1. 15 (서고 제19호) ○ 조성계획(최종) : 2009. 9. 24 (서고 제373호) <주요 변경내역> (→ 시설종류별 주요시설명 기재) ○ 공원 내 도서관 설치 - 제10차 도시공원위원회 상정 후 규모 조정 재상정 ○ 도로 : 700.66㎡ → 674.40㎡ (감26.26㎡) ○ 광장 : 694.14㎡ → 1,009.48㎡ (증315.34㎡) ○ 조경시설 : 15.86㎡ → 216.96㎡ (증201.10㎡) - 잔디밭, 화단, 그늘시렁 등 201.10㎡ (신설) ○ 휴양시설 : 256.98㎡ → 458.10㎡ (증 201.12㎡) - 휴게소 1개소 201.12㎡ (신설) ○ 교양시설 : 0.0㎡ → 576.80㎡ (증 576.80㎡) - 당초 : 도서관 793.50㎡ (신설 : 지하2층, 지상3층) - 변경 : 도서관 576.80㎡ (신설 : 지하2층, 지상2층) ○ 녹지및기타 : 8,282.86㎡ → 7,014.76㎡ (감 1,268.10㎡) <법적검토> ○ 시설률 : 16.76% → 29.50% (법정 40% 이하) ○ 건폐율 : 5.80% (법정 20% 이내)	○○구 ○○과 (관련 부서 없을 시는 공란)

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작성(예시)



[기본·신명태명조 13, 상 15, 하 10, 좌·우 18 용지여백으로 작성]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2025. .	
년 월 일	(제 차)	

(신명태명조 13)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신명태명조 22 진하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신명태명조 20)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장
제출년월일	2025. . .

(신명태명조 1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신명태명조 24, 진하게)

1. 의결주문 (신명태고딕 15, 문단위 15)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근린공원은 인근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전시관이 지어진지 오래되어 낙후됐고 전시관의 이용률도 낮아 기존의 전시관을 허물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을 건립하여 공원의 이용성을 더욱 높이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문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자문) 의결코자 함.

※내용 - 신명태명조 13, 문단위 10

2. 제안이유(입안취지)

가.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의 목적

- 기존의 전시관이 낙후되어 미관상 흉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를 철거하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을 건립하여 공원의 이용성을 높이하고자 함.

나. 조성계획(변경)의 필요성

- ○○근린공원은 1998년에 조성되어 인근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왔으나 전체적으로 시설이 낙후되고 특히, 전시관의 이용률이 낮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함.

3. 공원현황

- 위 치 : ○○구 ○○동 ○○번지 일대

- 공원면적

총 면 적	국·공유지 (신명태명조 12)		사 유 지	
26,696.8㎡	26,696.8㎡	100%	-	-

-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

- 최 초 : 1997. 1. 2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7호)
- 최 종 : 1900. 0. 00 (서울특별시고시 제1900-00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

- 최 초 : 1997. 8. 26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77호)
- 최 종 : 1900. 00. 00 (서울특별시고시 제1900-00호)

○ 주변여건

- ○○근린공원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으로 중심상가와 학교, 주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부지 서측으로 선사로를 끼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강동 사거리와 천일중학교에 접하고 있음.

4. 계획의 주요내용

○ 개발 목표 및 방향

- 기존의 낙후된 전시관을 대신하여 최신시설의 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공원 이용률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변경) 내용

〈신설〉

- 기반시설 : 소로 $72m^2$, 광장 $254m^2$
- 교양시설 : 도서관 1동 $427m^2$ (연면적 $1,945m^2$) 지하1층, 지상3층

〈변경〉

- 기반시설 : 소로 (감) $121m^2$ ($261m^2 \rightarrow 140m^2$)
- 편익시설 : 주차장 (감) $96m^2$ ($350m^2 \rightarrow 254m^2$)
- 녹 지 : (증) $214m^2$ ($17,734.8m^2 \rightarrow 17,948.8m^2$)

〈폐지〉

- 운동시설 : 체력단련장 3개소 $116m^2$
- 교양시설 : 전시관 1동 $340.2m^2$ (연면적 $755.97m^2$) 지하1층, 지상2층

5.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내용

○ 자연환경

- ○○근린공원은 평지에 조성되어 있으며 공원이 조성 된지 8년이 흘러 울창한 수림을 이루고 있음.
- 평균기온은 13.3℃이고, 평균 최고 기온은 8월에 30.2℃ 임.
- 강수량은 년 1,499.1mm이고, 월 최고 강수량은 7월에 510.7mm임(0000년 기준)
- 일조시간은 년 2116.6시간 이고, 평균풍속은 2.4m/s 임.

○ 인문환경

- 공원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으로 도로, 주택가, 학교, 상가들이 밀집하여 있음.

○ 관광환경

- ○○구에는 암사동 선사주거지·길동 자연생태공원 등의 관광 자원들이 있으며, ○○동 상업지구 및 ○○동 로데오 거리 등의 명소들이 있음.

6. 공원조성에 따른 부문별 계획

○ 토지의 이용

- 기존의 교양시설로서 전시관이 교양시설인 도서관으로 변경되어 공원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였고, 도서관의 조성으로 주변의 주차장 및 녹지 및 기타 부분이 다소 변경됨.

○ 동 선

- 공원은 전체적으로 순환 동선으로 되어 있으며 도서관 조성에 따른 주차장 출입구가 선사로에서 부지 남측의 6m도로로 변경 되었으며 공원 내 도서관 출입을 위한 소로가 1개소 추가됨

○ 공원시설의 배치

- 도서관 조성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위치가 다소 변경되나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위치 변경 및 새로운 시설로의 대체를 계획함.

- 기반시설(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
 - 도서관 조성에 따른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장을 새롭게 계획하고 기존 주차장(11대)을 대신하여 잔디블럭으로 포장된 주차장(10대)으로 계획함.
- 조경 및 식재
 - 기존 전시관의 위치에 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식생을 최대한 보전하고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일부 이식목은 전량 부지 내 재이식 을 원칙으로 계획함.
- 기 타
 - 도서관 조성으로 공원 내 동선 일부 변경에 따라 체련단련장 삭제됨.

7.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 영향 및 효과
 - 기존의 전시관 대신 도서관이 조성됨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들의 공원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되며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2025년도 제00차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으로 심의 시 지적사항 등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는 해당사항 없음.

8.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 주민 의견청취
 - 【 신 문 】(최초 결정 공원만 해당)
 - 게재 일자 및 신문 : 2025. 0. 0. 세계일보, 한국경제신문
 - 의견청취 기간 : 2025. 6. 22 ~ 7. 5 (14일간)
 - 접수의견 :
 - 【 구 보 】
 - 장 소 : ○○구 구보 제 ○○○호(2025년 월 일)
 - 의견청취 기간 : 2025. 6. 22 ~ 7. 5 (14일간)
 - 접수의견 :

【 인터넷 】

- 장 소 : ○○구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란
- 의견청취 기간 : 2025. 6. 22 ~ 7. 5 (14일간)
- 접수의견 :

○ 접수의견 조치사항

-

9. 관계기관 · 부서 협의결과

○ 협의 의견

- ○○과 :

○ 조치사항

10.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소계	2025	2026	2027	
계	3,900	3,900	231	1,284	2,385	
자치구비	1,570	1,570	231	500	839	부서명
시 비	1,680	1,680		504	1,176	부서명
국 고	650	650		280	370	기관명

- 재원조달방안 ※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고시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시행규칙 제8조 4호)

- 2025. 00. 00 : 서울시 투자심사 완료
- 현재 확보 예산 : 1,515백만원
 - ◇ 설계비 : 231백만원 (00년도, 구비231)
 - ◇ 조성비 : 1,284백만원 (00년도, 구비500, 시비504, 국비280)
- 확보 예정 예산 : 1,250백만원
 - ◇ 조성비 : 1,250백만원(00년도, 구비00, 시비00)

11. 검토 및 입안부서 의견

○ 법적검토 사항

- 공원시설률 : 당초 14.20% → 변경 14.25% (법정시설률 40% 이하)
- 공원건폐율 : 당초 1.74% → 변경 1.47% (법정건폐율 20% 이내)

○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 확인표 ※ 공공건축물 포함 안전만 작성

구 분			해당사항	비고
I	① 설계공모 당선작		✓	
	② 능력이 검증된 자와 수의계약	1) 설계공모에 당선된 이력이 있는 건축가		
		2)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3) 수의계약일 기준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위촉된 자		
		4) 사후 이용자평가에서 우수한 건물로 인정된 건축물의 설계자 등		
		5)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능력이 검증된 자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이 경우 구체적 근거 제시)		
	③ 신진건축가 지명공모(1억원 이하 건축설계)			
II	공공건축가 사전자문(I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5)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하고, II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건축가 자문의견 및 반영결과를 설명자료(ppt)에 첨부

○ 입안부서 의견

- (법률적 적합성 기재)

붙임 1.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부(총괄표, 시설조서, 도로조서)
2. 설명자료(PPT) 1부. 끝.

[용지여백 : 상 10, 하 15, 좌우 25]

- A3 (황) “한글문서”로 작성 -

○○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신명태명조 20, 진하게)

가. 총괄표(○○구 ○○동 ○○번지) (신명태명조 13, 박스내부 - 신명태명조 1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진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진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계	26,696.8	8,462.7	2	361.7	777.47	166	26,696.8	8,588.5	2	448.5	1,966.5	166	
기 반 시 설	소계	5,338	5,338				5,543	5,543					
	도로	4,158	4,158				4,109	4,109					감49㎡
	광장	1,180	1,180				1,434	1,434					증254㎡
조경시설	674	674				1	674	674				7	
휴양시설	193	174.5	1	21.5	21.5	72	193	174.5	1	21.5	21.5	72	
운동시설	1,304	1,304				16	1,188	1,188				16	감116㎡
교양시설	1,103	622.2	1	340.2	755.97	1	896	755	1	604	2,000	1	증132.8㎡
편익시설	350	350				3	254	254				3	감96㎡
관리시설						73						73	
녹지/타	17,734.8						17,948.8						증214㎡
시 설 륜 (법정40%)	(8,462.7 / 26,696.8) × 100 = 31.69%						(8,588.5 / 26,696.8) × 100 = 32.17%						
건 폐 륜 (법정20%)	(361.7 / 26,696.8) × 100 = 1.35%						(448.5 / 26,696.8) × 100 = 1.68%						

나. 시설조서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26668	8427			361.7	777.47	166			26668	8585			445	1965	166	
기 반 시 설	소 계			5,338	5,338								5,543	5,543						증205㎡
	도 로		천호동 360	4,158	4,158							천호동 360	4,109	4,109						감49㎡
	광 장	가	천호동 360	1,180	1,180						가-1	천호동 360	1,180	1,180						부호변경
											가-2	천호동 360	254	254						신설
조 경 시 설	소 계			674	674					1			674	674						7
	연 못	나	천호동 360	674	674						나	천호동 360	674	674						
	석 교	①	연못							1	①	연못								1 석재
	볼라드	⑩										천호동 360								6 석재
휴 양 시 설	소 계			193	174.5			21.5	21.5	72			193	174.5			21.5	21.5	72	
	팔각정자		천호동 360	40	21.5	목조	1동	21.5	21.5		1	천호동 360	40	21.5	목조	1동	21.5	21.5		
	휴게소	다	천호동 360	153	153						다	천호동 360	153	153						
		다-1	천호동 360	25	25						다-1	천호동 360	25	25						
		다-2	천호동 360	24	24						다-2	천호동 360	24	24						
		다-3	천호동 360	26	26						다-3	천호동 360	26	26						
		다-4	천호동 360	26	26						다-4	천호동 360	26	26						
		다-5	천호동 360	26	26						다-5	천호동 360	26	26						
		다-6	천호동 360	26	26						다-6	천호동 360	26	26						
	아워탁자	②	휴게소							12	②	휴게소								12 목재
	벤치	③	잔치역							52	③	잔치역								52 목재
	앉음벽	④	잔입구							8	④	잔입구								8 H450L71m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 물 (기)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 물 (기)		
								건축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 계			1,304	1,304					16			1,188	1,188					10	감116㎡	
	소운동장	라	천호동 360	998	998						다	천호동 360	998	998							
	체력 단련장	마	천호동 360	306	30						마	천호동 360	190	190							
		마-1	천호동 360	30	30						마-1	천호동 360	30	30							
		마-2	천호동 360	33	33						마-2	천호동 360	33	33							
		마-3	천호동 360	29	29						마-3	천호동 360	29	29							
		마-4	천호동 360	65	65						마-4	천호동 360	65	65							
		마-5	천호동 360	33	33						마-5	천호동 360	33	33							
		마-6	천호동 360	29	29															폐지	
		마-7	천호동 360	55	55															폐지	
		마-8	천호동 360	32	32															폐지	
	체력단 련시설	⑤	천호동 360							16	⑤	천호동 360							10	목재	
교양시설	소 계			1,103	622.2				340.2	755.97	1			896	755			427	1,945	1	증132.8 ㎡
	전 시 관	2		680	340.2	철근콘 크리트 슬라브	1동	340.2	755.97												폐지
	도 서 관										2	천호동 360	473	473	R.C	1동	427	1,945			시설 열람실 (100㎡) 휴게실 (100㎡)
	조류방사장	바		133	133						바		133	133							
	야외 무대	⑥		290	149						1	⑥		290	149					1	
편익시설	소 계			350	350						3			254	254					3	감96㎡
	주차장	사	천호동 360	350	350						사	천호동 360	254	254							감96㎡ (10대)
	자전거 보관대	⑦	전지역								3	⑦	전지역							3	스텐레스
관리시설	소 계										73									73	
	안내관	⑧	전지역								9	⑧	전지역							9	
	공원등	⑨	전지역								64	⑨	전지역							64	
녹지및기타	소 계			17.73 4.8										17.94 8.8							증214㎡
	녹 지		전지역	17.73 4.8								전지역	17.94 8.8								증214㎡

다. 도 로 조 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변 경	합 계					(4,158) 4,109				
당 초 변 경	소 로	계				(2,568) 2,519				
당 초 변 경		(3류) 3류	1 1	(6) 7	(43.5) 20	(261) 140	차량진입로 차량진입로	서측진입구 서측진입구	주차장 소로6	
당 초		"	2	5	213	1,065	주진입로	광장	남측진입구	
당 초		"	3	3	136	408	부진입로	북동측진입구	소로5	
당 초		"	4	3	42	126	부진입로	동측진입구	소로5	
당 초		"	5	3	169	507	부진입로	소로2	소로2	
당 초		"	6	3	67	201	부진입로	소로1	소로2	
신 설		"	7	4	18	72	부진입로	도서관	산책로7	
당 초		계				1,590				
당 초	산책로	-	1	3	98	294	산 책 로	소로2	소로3	
당 초		-	2	3	94	282	산 책 로	소로3	소로4	
당 초		-	3	2	28.5	57	산 책 로	산책로2	석교	
당 초		-	4	2	17.5	35	산 책 로	석교	소로5	
당 초		-	5	3	75	225	산 책 로	소로4	소로2	
당 초		-	6	2	51.5	103	산 책 로	산책로5	산책로5	
당 초		-	7	3	96	288	산 책 로	소로2	소로6	
당 초		-	8	3	102	306	산 책 로	소로6	소로2	

4. 도시공원위원회 설명자료 작성방법



▶ 공통사항

- 용지의 규격(작성기준) : A4용지
- HY견고딕, 맑은고딕 글씨체만 사용
- 방향표시 : 북측이 도면 상단부가 되도록 하고 좌측 상단에 표시

1) 표지

2) 상정안건 개요

- ▶ 공원현황, 상정사유, 추진경위 등 서술
 - ※마지막 변경 후 1년 이내 재상정 건은 마지막 상정 시 상정 사유와 당해 안건 상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곤 1년 이내 상정 금지)
- ▶ 주요결정내용 및 법적검토사항을 표로 작성

3) 위치도

- ▶ 항공사진을 사용하여 원경, 근경으로 작성하고, 공원위치, 주변의 주요 시설물 및 도로명 등을 표기
 - 위치도 원경 : 반경 1km 단위 표시, 공원경계 표시, 인근공원 및 개발 사업단지 경계 표시 등
 - 위치도 근경 : 반경 100m 단위 표시, 공원경계 표시 등
- ▶ 어린이공원과 같이 공원의 규모가 작아 위의 방법으로 위치가 잘 나타나지 아니할 때는 주위에 원으로 표시
- ▶ 주변의 주요 시설물명, 도로명 등을 표기

4) 비오톱1등급 현황도

5) 현황사진

- ▶ key map에 촬영방향 표시, 부지전경·근경·접근도로 현황 등

6) 심의(자문)의견 및 조치결과·재심의·재자문 안건만 작성

- ▶ 각각의 심의·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술하고,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 등 이미지를 첨부하여 작성

7) 입지여건 및 대상지 분석

- ▶ 주변 맥락이 잘 보이도록 작성
- ▶ 신축건물일 경우 필수

8) 조성계획도

- ▶ 조성계획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맞게 작성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원 내 적법 시설로만 구성할 것
- ▶ 변경 전·후, 공원시설물(법적) 명칭 기재
- ▶ 등고선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에 작성
- ▶ 주요시설은 도상의 시설 위에 시설명을 표기하되 도상에 표기가 어려울 경우 공원경계밖에 인출선을 내어 표기
- ▶ 변경 전·후 도면은 상호 대비가 잘 되도록 작성

◆ 공원시설별 결정도면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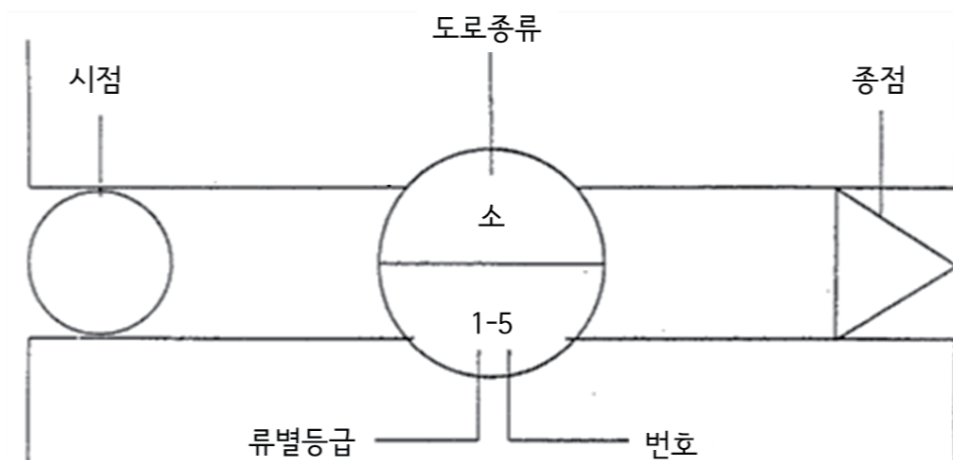
공원시설	색	공원시설	색
기반시설(도로 및 광장)	회 색	교양시설	하늘색
조경시설	녹 색	편익시설	고동색
녹지 및 기타	연두색	관리시설	보라색
휴양시설	주황색	도시농업시설	황토색
유흥시설	분홍색	재난관리시설	빨강색
운동시설	노란색		

※그밖의 시설은 다른 시설의 결정도면 색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색 사용

※시설별 구분이 필요할 경우 시설의 종류별로 지정된 동일 색깔로 진하고 얇게 칠하여 구분

▶ 도면작성 시 도로표시 : 도로의 시점·종점 및 도로번호 등 표기

[예시]— 소로 1류 5번 도로



※도시계획도로는 당해 도로의 등급, 일련번호 사용

9) 부분 조성계획도

- ▶ 상세도 전·후, 대형공원 등 필요 시 작성
- ▶ 부분별 조성계획도 구간은 도면 여백(상단표기 권장)에 전체 조성계획도를 키맵 표기 후 표시
- ▶ 부분별 조성계획도 1,2 등으로 작성하며, 식재계획도 및 시설물/포장계획도 등은 부분별 조성계획도 스케일에 맞춰 작성

10) 식재개념도

11) 식재계획도

- ▶ 변경 전·후 작성하고, 필요시 부분별 식재계획도 작성
- ▶ 수목명, 치수 등이 설명자료에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출선 및 글자크기 조정

12) 수목제거 및 이식계획도

- ▶ 저촉되는 수목이 있는 경우 이식, 존치, 폐기수량 조사

13) 시설물/포장 계획도

- ▶ 변경 전·후 작성하고, 필요시 부분별 계획도 작성
- ▶ 포장, 시설명, 치수 등이 설명자료에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출선 및 글자크기 조정
- ▶ 주요시설 상세도는 시설물별 규격, 재료명 기재하고, 치수보조선 등을 삭제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 (설명자료에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출선 및 글자크기 조정)

14) 우배수계획도

15) 주요 도입 시설물

16) 단면도

- ▶ 공원의 입지 여건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연접 시설(도로 및 주택 등)까지 함께 표시

17) 조감도 - 경관심의 해당사업은 필수적으로 작성

- ▶ 건축물 주변 현황

18) 마스터플랜

19) 경관심의를 관한 사항(표지) - 경관심의 해당사업만 작성

20) 건축개요

21) 경관심의 체크리스트 - 경관심의 해당사업만 작성

22) 실내놀이터 체크리스트 –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23) 공공건축가 자문 – 자문 대상인 경우만 작성

- ▶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술하고,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 등 이미지를 첨부하여 작성

24~26) 건축물계획도

-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등
 - 평면도 : 층별로 작성하고 용도 및 치수를 표기하고, 실별 면적표 작성
 - 정·배·측면도 : 부분별 재료를 인출선으로 그어내어 표기
 - 종·횡 단면도 : 기존지형이 최대로 변경되는 지역 1개소 이상 작성
 - 투시도 : 건축물 주변 현황이 표현되도록 작성
- ▶ 향후 실시 설계는 물론 사업 시행 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계획 과업내용의 수준으로 작성
- ▶ 건축물 단면도 작성 시 현 지반고(빨간 점선)와 계획지반고(검정실선)를 구분하여 표기하며 여백에 토공량 기입
- ▶ 도서관, 체육관, 지하주차장 등 도입 시 타당성 관련 자료 및 운영계획 작성

27) 시설운영계획

28) 끝

29) 참고자료 – 필요시 작성

1) 표지

I-SEOUL-U 1844년의 서울

※ HY건고덕, 맑은고덕 이외 구역제 사용금지
※ 용량 25MB 이하로 작성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경관심의
대상사업일 경우만

2020. .
(HY건고덕 32 정적제)

요구기관 : ○○구
(HY건고덕 36 정적제)

2-1) 상정안건개요

(1972년 2기)

(국립자연사 박물관에서 작업)

상정 안건 개요

○○근린공원

1. 공원개요 (법정구역 16)

위치	○○구 ○○동 ○○번지 (법정구역 16)	면적	000,000㎡
공원결정	최초 1900.00.00 (000고시00호)	최종	1900.00.00 (000고시00호)
조성계획	최초 1900.00.00 (000고시00호)	최종	1900.00.00 (000고시00호)

2. 상정개요 및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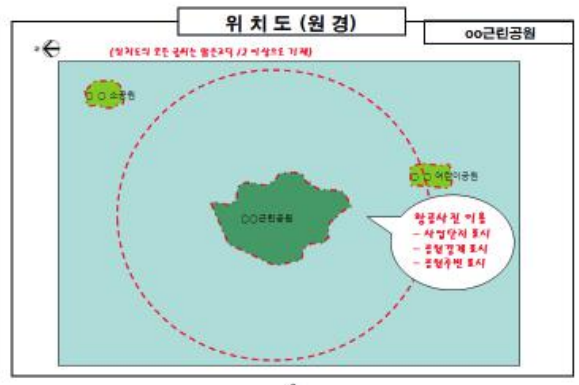
상정사유	- 공원 내 도서관 도입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업비	000백만원(설계비 00, 공사비 00) 국보액 : 00백만원(국립중앙도서관, 국보 00/시비 00/ 구비 00) 예산액 : 00백만원(예산년도, 국보 00/시비 00/ 구비 00)	관련부서 (○○구)	0000과(공원조성계획) 0000과(건축공사)
추진경위	- 2000.00.00 ~ 00.00. : - 2000.00.00 ~ 00.00. : - 2000.00.00 ~ 00.00. : - 2000.00.00 ~ 00.00. : 공공건축가 사전자문 - 2000.00.00 ~ 2019년 제2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 재심야)		
결정사항	서울시보 00호, 서울시 홈페이지	기간	2019.00.00 ~ 00.00(00일간)
주요의견	주요의견 : 서울시 00과 ;		
조치계획			

공원결정, 조성계획 등의 내용은 각급적 생략하고
국립 법정책학과 문헌열 우호경의열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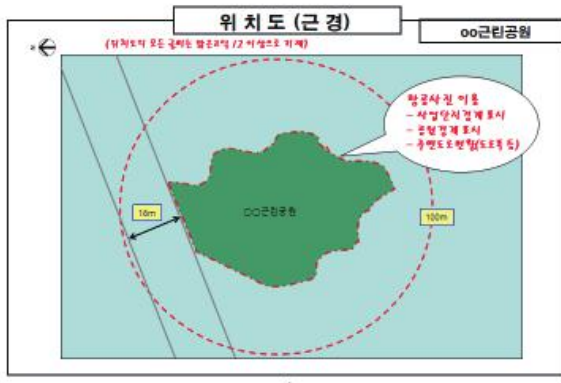
2-2) 상정안건개요

상정 안건 개요				○○근린공원
3. 주요결정내용				
구분	부지면적 (㎡)			세부내용 (법정내외 모두 작성/ 설정, 변경, 폐지구분)
합계	000.00	000.00	-	
가변	000.00	000.00	중 000.00	
시설	000.00	000.00	중 000.00	
조경시설	000.00	000.00	중 000.00	제지 : 비약물수 85.5㎡, 열각열차 2개소
유체시설	000.00	000.00	중 000.00	제지 : 어린이놀이시설 350.5㎡, 유아놀이시설 25.87㎡
조경시설	000.00	000.00	중 000.00	제지 : 휴게소 30.5㎡, 등대 45.5㎡
운동시설	000.00	000.00	중 000.00	제지 : 다목적운동장 3,147.5㎡, 체육단련장 368.5㎡
교양시설	000.00	000.00	-	
관리시설	000.00	000.00	-	제지 : 물수원 1개소
관리시설	000.00	000.00	-	
녹지 및 기타	000.00	000.00	중 000.00	
4. 법적사항				
시설물	당초 : 00.00%	변경 : 00.00%	폐지 : 재현없음	기타사항(단순공원, 특정시설물 등)
건물물	당초 : 00.00%	변경 : 00.00%	폐지 : 00% 이내	

3-1) 위치도(원경)



3-2) 위치도(근경)



4) 비오톱 1등급 현황도

해당공원의 핵심 비오톱 / 1등급 현황도를, 설정(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작성, 사업대상지 표시)



5) 현황사진

현황 사진 oo근린공원

Key Map

위치현황, 근경, 접근도로 현황
최근 3개월 이내

<전경>

1. <전입로> 2. <주요시설> 3. <주요시설>

4. <전입로> 5. <주요시설>

[참고] 토지이용계획도 / 단지배치도 (소위)

※경미사업 관련 소위협의 자문 시 필요

토지이용계획도/단지배치도 oo근린공원

토지이용계획도 소공원

단지배치도 소공원

6) 심의의견 및 조치 결과

※ 제삼자 발견인 경우 작성

심의의견 및 조치결과 oo근린공원

2019.00.00.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 재심의)

심의 의견	조치 결과
도면 등 이미지 첨부	도면 등 이미지 첨부

7) 입지여건 및 대상지 분석

※ 실측 현황의 경우 필수

입지여건 및 대상지분석 oo근린공원

8) 조성계획도

[참고] 총괄 조성계획도 (지구로 구분된 경우)

조성계획도 oo근린공원

단조 분조

필적될 곳이
눈에 띄이게 표시

필적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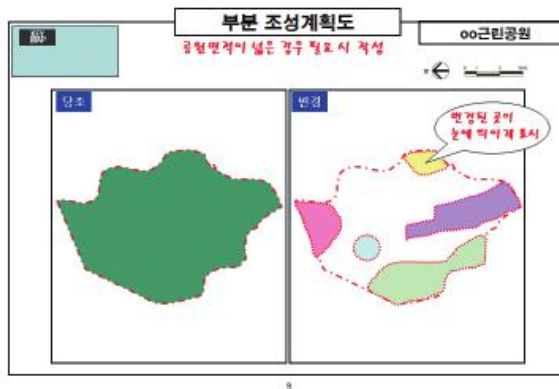
조성계획도 oo근린공원

단조 분조

필적될 곳이
눈에 띄이게 표시

필적작성

9) 부분 조성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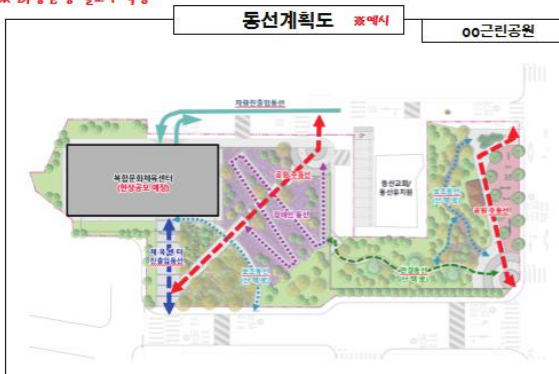
[참고] 기본방향 및 목표(필요시)

※ 필요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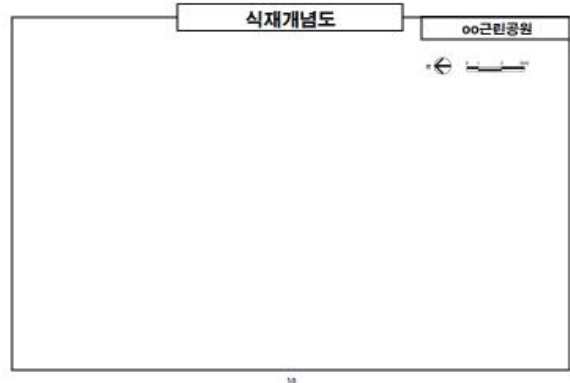


[참고] 동선계획도(필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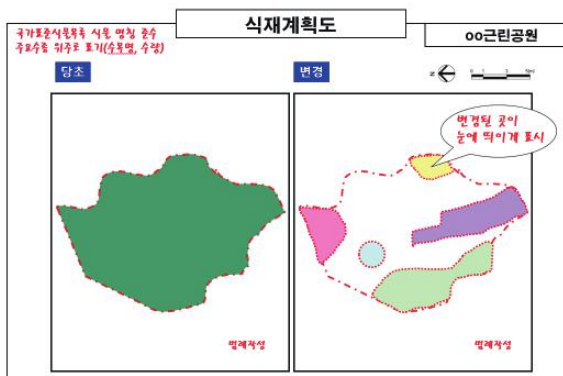
※ BF동선 등 필요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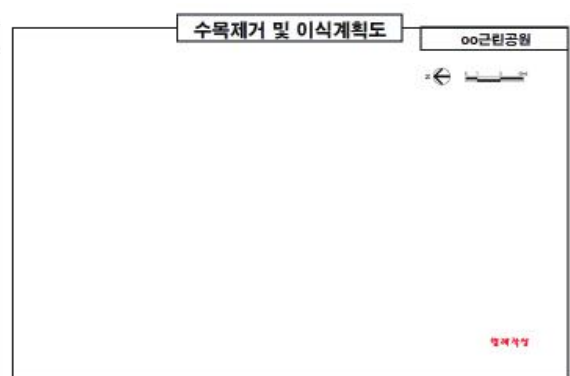
10) 식재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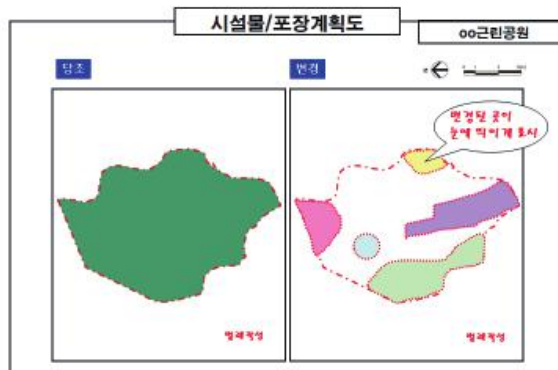
11) 식재계획도



12) 수목제거 및 이식계획도



13) 시설물/포장계획도



14) 우배수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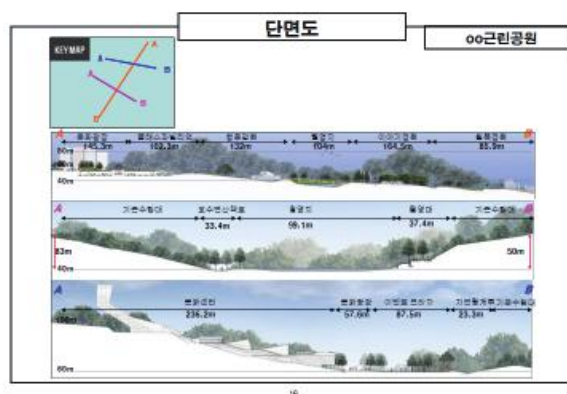
15) 조명 / CCTV 계획도 - 해당시



16) 주요 도입 시설물



17) 단면도



18) 조감도



19) 마스터플랜



20)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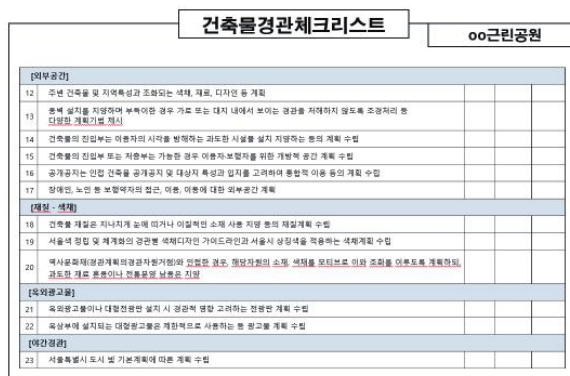
21) 건축개요



22-1)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건축물경관채크리스트		○○○근린공원		
[관람선의 주요 핵심 사항]		상당 부여	중우 부여	해당 없음
1	대성지를 포함한 지역 경관의 경관을 형성시키는 복도 및 구역 기능분할			
2	주요 산 중 조망대상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계획 등에 대한 대상지 통합적 · 일체적 계획			
3	가로경관을 지배하는 목질이나 다양한 고대인, 폐쇄적인 디자인 지장하는 입면계획			
4	대성지 주변의 주요한 조망점(관, 종문, 정문)을 일화하고 일세를 바탕으로 한 산물레이스선 형성			
[놀이·배치·규모]				
5	세울식 놀이장비(복합식 놀이·경기장) 및 주요 경관경관 분석의 극한 계획			
6	공공적 자원(공원)의 특성을 건축물은 녹지공간과 자원분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 배치 등으로 계획			
7	주변지역의 가로공간·녹지계획을 단절하지 않는 배치 계획			
8	주변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상과 조형상의 일화성			
[형태·입면]				
9	기단부 설치 및 전면부 분할 등 주연스케일의 가로공간 조성 계획			
10	일체적 디자인, 지체 등을 통해 가로경관을 지배하지 않는 옥상설치 및 부수설치 계획			
11	역사문화유산·경관자원의 자연자원과 인공적인 고층건축물의 건축, 조형, 분할 등 제자원과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 수립			

22-2) 건축물경관 체크리스트



23-1) 실내 놀이터 가이드라인 - 해당시

※ 공원 내 실내놀이터 안전인 경우 작성

[illegible]

23-2) 실내 놀이터 가이드라인 - 해당시

공공 내 실내용이더 가이드라인

00근로환경

■ 공공 내 실내용이더 가이드라인 기본원칙(공유여가정책제)

연번	구분	검토요목	반영여부	반영결과
5	도입규모	면적적 250~500㎡ 미만(경장) · 바닥면적 150㎡ 이상으로 조성 · 어린이 놀이구역(70㎡/7명) 고려하여 놀이공간 구성		
6	전용놀이	3~4㎡(경장)		
7	운동시간	화~일요일, 야식~18시		
8	이용대상	0 ~ 전유세(경장)		
9	이용료	· 무료		
10	공간구분	놀이공간, 편의시설공간 = 80 : 20(경장) · 놀이공간 : 잔디장, 그늘막, 사물놀이 등 · 시설공간 : 휴게공간, 현관, 대피로 등		
11	놀이시설의 종류	어린이놀이시설(가구) 설치(경장)		
12	프로그램 운영	· 설치 유형 프로그램 연계 운영		
13	관리인력	필수 2명(상근)		

24) 공공건축가 자문 - 해당시

공공건축가 자문 00근린공회

- 자문위원 : _____

- 자문횟수 : _____

자문 의견	반영결과
도면 등 이미지 첨부	도면 등 이미지 첨부

24-1) 각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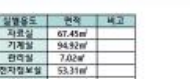
당초



평면도(1층)

00근린공원

변경



실명용도	면적	비고
저문실	67.45㎡	
기거실	94.52㎡	
환기실	7.62㎡	
환기실보통	53.31㎡	
화장실	19.95㎡	
물마실	65.36㎡	
합계		



24-2) 각층 평면도

당초

변경

구분	면적	비고
지하실	87.45㎡	
기계실	84.92㎡	
엘리베이터	7.82㎡	
전차량보존	53.31㎡	
화장실	19.05㎡	
홀리방	83.36㎡	

24-3) 각층 평면도

The diagram illustrates the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a building's roof level plan and a nearby park. A large rectangle on the left is labeled '평면도 (지붕층)' (Plan View (Roof Level)). A dashed vertical line separates this from a smaller rectangle on the right labeled '○○군립공원' (○○ County/Provincial Park). The diagram is titled '○○군립공원' at the top right.

25-1) 각 입면도

입면도(정면도)

당초

※ KEY-PLAN

수상권 안도

THK15

THK16

THK17

THK18

THK19

THK20

THK21

THK22

THK23

THK24

THK25

THK26

THK27

THK28

THK29

THK30

THK31

THK32

THK33

THK34

THK35

THK36

THK37

THK38

THK39

THK40

THK41

THK42

THK43

THK44

THK45

THK46

THK47

THK48

THK49

THK50

THK51

THK52

THK53

THK54

THK55

THK56

THK57

THK58

THK59

THK60

THK61

THK62

THK63

THK64

THK65

THK66

THK67

THK68

THK69

THK70

THK71

THK72

THK73

THK74

THK75

THK76

THK77

THK78

THK79

THK80

THK81

THK82

THK83

THK84

THK85

THK86

THK87

THK88

THK89

THK90

THK91

THK92

THK93

THK94

THK95

THK96

THK97

THK98

THK99

THK100

THK101

THK102

THK103

THK104

THK105

THK106

THK107

THK108

THK109

THK110

THK111

THK112

THK113

THK114

THK115

THK116

THK117

THK118

THK119

THK120

THK121

THK122

THK123

THK124

THK125

THK126

THK127

THK128

THK129

THK130

THK131

THK132

THK133

THK134

THK135

THK136

THK137

THK138

THK139

THK140

THK141

THK142

THK143

THK144

THK145

THK146

THK147

THK148

THK149

THK150

THK151

THK152

THK153

THK154

THK155

THK156

THK157

THK158

THK159

THK160

THK161

THK162

THK163

THK164

THK165

THK166

THK167

THK168

THK169

THK170

THK171

THK172

THK173

THK174

THK175

THK176

THK177

THK178

THK179

THK180

THK181

THK182

THK183

THK184

THK185

THK186

THK187

THK188

THK189

THK190

THK191

THK192

THK193

THK194

THK195

THK196

THK197

THK198

THK199

THK200

THK201

THK202

THK203

THK204

THK205

THK206

THK207

THK208

THK209

THK210

THK211

THK212

THK213

THK214

THK215

THK216

THK217

THK218

THK219

THK220

THK221

THK222

THK223

THK224

THK225

THK226

THK227

THK228

THK229

THK230

THK231

THK232

THK233

THK234

THK235

THK236

THK237

THK238

THK239

THK240

THK241

THK242

THK243

THK244

THK245

THK246

THK247

THK248

THK249

THK250

THK251

THK252

THK253

THK254

THK255

THK256

THK257

THK258

THK259

THK260

THK261

THK262

THK263

THK264

THK265

THK266

THK267

THK268

THK269

THK270

THK271

THK272

THK273

THK274

THK275

THK276

THK277

THK278

THK279

THK280

THK281

THK282

THK283

THK284

THK285

THK286

THK287

THK288

THK289

THK290

THK291

THK292

THK293

THK294

THK295

THK296

THK297

THK298

THK299

THK300

THK301

THK302

THK303

THK304

THK305

THK306

THK307

THK308

THK309

THK310

THK311

THK312

THK313

THK314

THK315

THK316

THK317

THK318

THK319

THK320

THK321

THK322

THK323

THK324

THK325

THK326

THK327

THK328

THK329

THK330

THK331

THK332

THK333

THK334

THK335

THK336

THK337

THK338

THK339

THK340

THK341

THK342

THK343

THK344

THK345

THK346

THK347

THK348

THK349

THK350

THK351

THK352

THK353

THK354

THK355

THK356

THK357

THK358

THK359

THK360

THK361

THK362

THK363

THK364

THK365

THK366

THK367

THK368

THK369

THK370

THK371

THK372

THK373

THK374

THK375

THK376

THK377

THK378

THK379

THK380

25-2) 각 입면도

입면도(좌측면도)		oo근린공원
당초	변경	
26		

25-3) 각 입면도

입면도(우측면도)		oo근린공원
당초	변경	
27		

26-4) 각 입면도

입면도(배면도)		oo근린공원
당초	변경	
변경전	변경후	
28		

27) 건축물 투시도

건축물 투시도		oo근린공원
당초	투시도	
29		

28) 건축물 조감도

건축물 조감도		oo근린공원

29) 시설운영계획

시설운영계획		oo근린공원

5. 심의안건별 설명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건축계획관련 설명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 대상 부지 내 현황 사진 및 입목조사자료 첨부
- ▶ 단면도에 현 지반고(빨간 점선)와 계획지반고(검정 실선)를 구분하여 표기하며 여백에 토공량 기입
- ▶ 입면도 등에 규격 및 재료 기재
- ▶ 조감도는 건축물뿐 아니라 공원과의 조화를 볼 수 있는 스케일로 작성
- ▶ 시설물 도입 시 그 타당성 자료를 첨부 할 것
 - 도서관(문화회관, 보육시설, 경로당 등)의 경우, 서울시 전체 해당시설 현황, 안건상정 자치구 (영향권 내 인접 자치구) 내 해당시설 현황, 해당시설 설치 시 영향권 내 (추정)이용객 등
 - 체육관의 경우, 해당 자치구 내 배드민턴장 등 실외 운동시설 현황 (적법, 불법 포함) 및 체육관 설치 후 조치 계획(방침), 체육관 설치 시 영향권 내 (추정)이용객 등

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주차장, 저류시설 등) 설명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 지하시설 설치
 - 외부 돌출시설(출입구, 환기구 등)
 - 토심 확보 방안, 이식계획 및 배수처리계획 등 표시
 - 중복결정 시설은 지상부에 돌출되더라도 공원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원 시설면적(시설률 등)에 반영하지 않음.

다. 특정기술로 오해할 수 있는 용어 표기 금지

- ※특정기술 :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말함.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07

참고자료

1. 도시공원위원회 연혁
2. 공원조성계획 결정요청 시 주요 검토사항
3. 공원계획 수립 및 시공 기록보존
4.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5.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관련 서식
6.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법규

07 참고자료

1. 도시공원위원회 연혁



연도	주요내용	비고								
1991.5.1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법적근거 마련 - 위원회는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 또는 공원관리사무소장이 되며,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1993.1.1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 위원회는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1997.12.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 위원회는 위원장(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2인(환경관리실장과 위원중 호선한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001.9.29.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 임기만료전 위원 해촉,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시 직무대행(위원중 최연장자 순),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의결 회피 규정 신설									
2001.12.3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 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table><tr><th>개정 전</th><th>개정 후</th></tr><tr><td>조성계획의 결정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td><td>삭제</td></tr><tr><td>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td><td>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조성계획 및 이의 변경에 관한 사항</td></tr><tr><td>기타 공원에 관한 중요사항</td><td>좌동</td></tr></table>	개정 전	개정 후	조성계획의 결정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	삭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조성계획 및 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에 관한 중요사항	좌동	
	개정 전	개정 후								
	조성계획의 결정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	삭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조성계획 및 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에 관한 중요사항	좌동									
2003.6.1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국장과 위원중에 호선한 1인이 된다.									
2005.6.1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푸른도시국장과 위원중에 호선한 1인이 된다.									
2005.12.29.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2007.7.3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으로 직무 대행									

연 도	주 요 내 용		비 고
2009.1.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 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조성계획 및 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조성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위원 해촉사유 내용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	
2012.3.1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		
2017.1.5.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 -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 추가하여 도시공원 내 건축물에 한해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2017.5.1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 제24조의 제목 띄어쓰기, 심의대상 추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 - 제25조제2항 부위원장에 대한 사항, 제4항 연임규정		
	개정 전	개정 후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50조제1항	법 제16조제4항, 법 제50조제1항	
	사항을 심의하기	사항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촉직 위원	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17.10.2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 제5조 위원장 직무대리		
	개정 전	개정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례 제26조 3항에 따라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8.5.1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 제3조 입안권자 변경, 안건을 심의, 자문, 보고 안건으로 구분 사항 신설 - 제14조 민간공원 제안자문사항과 보고에 따른 의결유형 신설 - 제14조 심의결과를 회의결과로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안건에는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안건에는 입안권자가~ 시장이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안건에~/간사가 파워포인트로	상정안건에~/간사 및 입안권자가 발표 자료로	

연도	주요내용		비고
2018.5.15.	개정 전	개정 후	
		민간공원 제안자문은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로 의결), 보고에 따른 의결유형은 원안수용, 조건부수용, 재보고로~	
	심의결과	회의결과	
2019.03.19.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 16조 3항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소공원·어린이공원·경미한 변경의 조성 계획결정(변경)은 소위원회에서 수권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위원회 보고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수권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위원회 보고한다. 1. 소공원·어린이공원의 공원조성계획 최초결정 2. 건축물에 대한 변경이 포함된 소공원·어린이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3. 공원 내 건축물 설계공모 전 사전자문	
2019.06.1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 16조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소위원회의 심의 권한과 관련된 조항 삭제 등) - 17조 가로수 심의에 대한 사항(소위원회의 심의 권한과 관련된 조항 삭제 등)		
	개정 전	개정 후	
	① 현장조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 3인 이상 10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수권결정을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자문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개발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자문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3. 공원 내 건축물 설계공모 전 사전자문 4.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사항 5.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6.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자문	
	② 현지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수권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한다. 1. 소공원·어린이공원의 공원조성계획 최초결정 2. 건축물에 대한 변경이 포함된 소공원·어린이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3. 공원 내 건축물 설계공모 전 사전자문	② 현장 ③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조사·자문한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고, 같은 항 1호 중 공원조성계획의 의제조항이 없는 개발사업과 같은 항 2호의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사전 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가로수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수권결정한다.	제1항 각 호의 가로수 심의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사전 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가로수 자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한다.	
2020.10.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제25조) -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를 “25명”에서 “29명”으로 변경		

연도	주요내용	비고			
2020.10.2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 제17조 가로수 심의 삭제				
	<table><tr><th>개정 전</th><th>개정 후</th></tr><tr><td>제17조(가로수 심의) 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개정(2009.3.18.)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2. 가로수 바뀌심기 및 신규 식재에 관한 사항 3.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 신설도로 등의 가로수 계획 4. 기타 가로수 관련 주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가로수 심의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사전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가로수 자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한다.</td><td>제17조 삭제</td></tr></table>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가로수 심의) 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개정(2009.3.18.)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2. 가로수 바뀌심기 및 신규 식재에 관한 사항 3.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 신설도로 등의 가로수 계획 4. 기타 가로수 관련 주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가로수 심의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사전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가로수 자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가로수 심의) 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개정(2009.3.18.)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2. 가로수 바뀌심기 및 신규 식재에 관한 사항 3.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 신설도로 등의 가로수 계획 4. 기타 가로수 관련 주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가로수 심의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사전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가로수 자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 삭제				
2024.1.3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 제13조 발언을 회의진행 등으로 변경				
	<table><tr><th>개정 전</th><th>개정 후</th></tr><tr><td>제13조(발언)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은 동일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회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찬·반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한 설명은 할 수 있다.</td><td>제13조(회의진행 등)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은 동일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회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③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24.01.30.]</td></tr></table>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발언)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은 동일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회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찬·반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한 설명은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진행 등)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은 동일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회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③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24.01.30.]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발언)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은 동일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회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찬·반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한 설명은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진행 등)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은 동일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회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③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24.01.30.]				

2. 공원조성계획 결정요청 시 주요 검토사항



가. 공통사항

- ▶ 입안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작성하여 결정 요청
- ▶ 제출부수 : 도면 1부, 조서 1부

나. 제출도서 종류

- ▶ 지적사항 조치보고(원안 가결된 안건은 해당없음) 1부.
- ▶ 조성계획결정조서 (총괄표, 시설조서, 도로조서) 1부.
- ▶ 조성계획결정 도면(전, 후) 1부.
- ▶ 심의 시 지적된 건축물, 공작물의 수정된 도면 1부.

다. 도서작성

- ▶ 총괄표, 각종조서 : 심의요청도서 작성요령과 같음
- ▶ 조성계획결정도면
 - 축척 1/500~1/1,500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수치지형도 포함)에 공원조성계획 결정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 단, 소공원 등 소규모 공원의 경우는 1/500축척의 도면 별도 제출
 - ※도면이 여러 장일 경우 KEY MAP 작성
- ▶ 지정색깔넣기 ※심의요청 도서작성 [색깔넣기 방법] 참조
- ▶ 도면상의 시설위에는 조서상의 부호를 기재(시설명은 범례로 작성)

3. 공원계획 수립 및 시공 기록보존



- ▶ 공원녹지분야의 각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시행에 관한 서류, 책자, 도면 등이 보관의 어려움으로 조기에 폐기처분되어 자료 구축과 활용이 곤란하므로 기록보존 방법 개선
- ▶ 공원조성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시 분석도면, 부분별 계획도면, 마스터플랜, 주요설계도면 등을 영구기록 보존가능 매체로 보존
- ▶ 공원조성사업 및 주요시설 보완사업 시행 시 공사 전·중·후 및 주요 공정을 영구기록 보존가능 매체로 기록 보존
-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고시자료를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등재
- 홈페이지주소 : <https://urban.esoul.go.kr>

4.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7조

-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관련 서식



구 분	서식명	주요내용	비고
위원위촉	1) 위원 추천 의뢰	공원조성과(간사) → 관련 부서	
	2) 위촉장	시장 → 위원	
회의운영	3) 도시공원 위원회 개최 알림	공원조성과 → 전 부서	
	4) 상정안건 제출	해당부서 → 공원조성과	
	5)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계획	최종결재 : 위원장 ※상정안건내용 사전 설명(간사)	
	6) 도시공원위원회 참석 알림	공원조성과 → 해당부서	
	7) 참석위원 서명	회의시작 전 본인 서명 청렴서약서 내용 포함	
	8) 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성원보고, 개의, 전화 회의결과 및 금회 안건보고, 안건설명, 심의 결과 발표, 폐회선언 등	
	9) 회의결과 발표	심의결과 및 다음회의 일정 알림	
회의결과 및 정리	10)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최종결재 : 위원장	
	11)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공원조성과 → 해당 부서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의결과 보완(조치결과 제출)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 요청 등 후속절차 이행	
	12) 조치계획		
	1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장		

1) 위원 추천 의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0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1.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건강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과 공원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도시공원위원회 제14기 위원의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제15기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 전문가를 **2025. 0. 0.(목)**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가 추천 분야 및 담당부서

추천 분야	추천 인원	비 고
공원·조경	분야별 2 ~ 3인	한국조경사회
생태·산림		한국조경학회
문화·프로그램		(재)환경조경발전재단
건축	2 ~ 3인	대한건축학회
도시계획	2 ~ 3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경관·디자인	2 ~ 3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협회
토목(시공)·안전	2 ~ 3인	대한토목학회

나. 위원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다. 추천방법

- 양식(붙임2)에 의거 추천(가급적 추천 인원수 이상으로 추천 요망)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분야별 여성위원 40% 이상 추천
- 현재 위촉된 위원의 중복 추천 방지를 위해 현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명단(제13기) 참고

라. 선정방법 : 추천된 위원 후보자 예비 명부 작성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붙임 1.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개요 및 명단 1부.

2. 추천양식 1부. 끝.

2) 위촉장

제 - 호

위촉장

○ ○ ○

귀하를 제 ○ ○ 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 ○

3) 도시공원 위원회 개최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5년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알림

1. 2025년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2025. 0. 0.(금)까지** 상정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개요 】

가. 개최일시 : **2025. 0. 0.(화) 14:00**

나.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다. 제출서류

붙임1) 심의안건(요약서, 조성계획조서 포함)

붙임2) 설명자료(ppt)

※ 제출서류 일체를 기일 내 공문으로 제출한 안건만 위원회에 상정(수정사항도 포함)

2. 아울러, 미흡한 자료로 인해 안건이 철회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열람공고) 기간 또는 사전에 사전검토회의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자료작성 시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검토회의 개요 】

가. 참 석 자 : 공원조성과, 안전제출부서 담당자·용역사 등

나. 일 정 : 자료제출 전 공원조성과 담당자와 회의일정 협의

다. 회의자료 : 작성 중 또는 작성 완료된 상정안건 자료(안건 파악 후 개최여부 확정)

【 자료작성 시 유의사항 】

가. 자료 작성은 반드시 붙임문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양식 업데이트)

나. 도면, 항공사진, 현황사진, 시뮬레이션 등은 현황에 맞는 최신 자료 활용

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 및 유관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내실 있게 작성

※ 국토계획법 제28조 제4항, 제5항 재열람공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해 청취한 주민의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심의의견을 공원조성계획(안)에 반영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 재열람공고를 하여야 함(붙임4 참고)

라. 「정원도시국 주요업무추진지침」 및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여 관련법 등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

마. 도시공원위원회가 도시공원 내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므로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경우 설명자료(ppt)에 경관심의 자료 작성

바. 행정2부시장 방침 제1호(2019.01.02.) 「공원 내 공공건축물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공원 내 공공건축물 설치 시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코자 하오니, 공공건축물 포함 안건의 경우 붙임1에 확인표 작성

사. 회의결과 부결, 부동의 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상정이 금지되어 있으니, 안건 상전 전에 면밀히 검토

아. **특정기술로 오해할 수 있는 용어 표기 금지**

※특정기술 :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말함.(「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3.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장 출입은 실무 추진부서 및 전문기관의 당해안건 검토책임자로 제한**되므로 추가 참여자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진행요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안건순서는 상정안건의 접수(수정 및 보완이 발생하지 않은 안건) 순서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안건이 많은 경우 당일 심의하지 못하고 다음 위원회로 상정하여 심의·처리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정안건(요약서, 공원조성계획조서 포함) 작성예시 1부.

2. 설명자료(ppt) 작성서식 1부.

3. 공원조성계획 입안 관련 열람공고시 관련부서 협의 철저 공문 1부.

4.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관련 질의회신 알림 공문 1부. 끝.

4) 상정안건 제출



강남구



수신 서울특별시시장(공원조성과장)

(경유)

제목 2025년도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상정안건 제출(○○○○○)

1. 서울시 공원조성과-0000(2025.0.0.)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 ○○○○○○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자 불임과 같이 상정안건을 제출합니다.

가. 안 건 명 :

나. 위 치 :

다. 면 적 :

라. 심의도서 : 별첨

- 불 임
1. 심의요약서 1부
 2. 심의상정안건 조서 1부
 3. 조성계획조서 1부
 4. 설명자료(PPT) 1부. 끝.

5)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2025년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일 시 : 2025. 0. 0. (화) 14:00
2.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3. 참석대상 : 도시공원위원 29인
4. 상정안건 : 7건 (심의 7건)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붙 임 1.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 개최개요 1부
 2.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조서 1부. 끝.

5)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계획



제00차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계획

2025. 0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

작성자

과명: 공원조성과

담당: ○○○
(☎2133-2081)

팀장: ○○○
(☎2133-2078)

과장: ○○○
(☎2133-2050)

「제00차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계획

〈회의개요〉

- ◆ 일 시 : 2025. 0. 0. (화) 14: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 참석대상
 -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29인
- ◆ 안 건 : 8건 (심의 7, 자문 1)
 - 심의 7건, 자문 1건

1	
2	
3	
4	
5	
6	
7	
8	

5)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계획



2025. 0. 0.(화)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안건

(2025년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목 차

□ 상정안전 개요

□ 상정안전

- | | | |
|----|--|----------------------|
| 1. | | --- 은 평 구 --- |
| 2. | | --- 강 서 구 --- |
| 3. | | --- 강 남 구 --- |
| 4. | | --- 강 남 구 --- |
| 5. | | --- 서 초 구 --- |
| 6. | | --- 양 천 구 --- |
| 7. | | --- 중부공원
여가센터 --- |

5)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계획

□ 상정안건

번호	요청기관	안 건 명	주 요 내 용 (맑은고딕 진하게 11)	비고
1	중부공원 여가센터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 심 의 - (맑은고딕 11)	<공원현황> (맑은고딕 진하게 11) ○ 위치 : ○○구 ○○동 ○○번지 일대 (맑은고딕 11) ○ 면적 : 604,178.00㎡ ○ 공원결정(최초) : 2009. 1. 15 (서고 제19호) ○ 조성계획(최종) : 2009. 9. 24 (서고 제373호) <주요 변경내역> (→ 시설종류별 주요시설명 기재) ○ 공원 내 도서관 설치 - 제10차 도시공원위원회 상정 후 규모 조정 재상정 ○ 도로 : 700.66㎡ → 674.40㎡ (감26.26㎡) ○ 광장 : 694.14㎡ → 1,009.48㎡ (증315.34㎡) ○ 조경시설 : 15.86㎡ → 216.96㎡ (증201.10㎡) - 잔디밭, 화단, 그늘시렁 등 201.10㎡ (신설) ○ 휴양시설 : 256.98㎡ → 458.10㎡ (증 201.12㎡) - 휴게소 1개소 201.12㎡ (신설) ○ 교양시설 : 0.0㎡ → 576.80㎡ (증 576.80㎡) - 당초 : 도서관 793.50㎡ (신설 : 지하2층, 지상3층) - 변경 : 도서관 576.80㎡ (신설 : 지하2층, 지상2층) ○ 녹지및기타 : 8,282.86㎡ → 7,014.76㎡ (감 1,268.10㎡) <법적검토> ○ 시설률 : 16.76% → 29.50% (법정 40% 이하) ○ 건폐율 : 5.80% (법정 20% 이내)	○○구 ○○과 (관련 부서 없을 시는 공란)

6) 도시공원위원회 참석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 참석 안내

귀 기관(부서)에서 상정요청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본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의 발표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 의 명 :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본위원회)

2. 개최일시 : 2025.00.00.(화) 14:00 ~

3.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4. 참 석 자 : 안건 제출 부서장 포함 3인

※ 의뢰기관에서 안건 설명(설명자 : 사무관 이상)

전문분야 설명 등으로 추가 참여자가 필요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 입장 가능

5. 상정안건 : 3건 [심의 2, 자문 1]

가.

나.

다.

발표 시 유의사항

1. 발표는 입안부서 사무관이 10분 내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문안건과 재심의 (재자문) 안건은 5분 내외로 설명하여야 함.

2. 경관심의 포함 안건의 경우 경관심의 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질의응답 시 용역사의 업체명을 절대로 밝히지 않아야 함.

4. 설명자료(ppt)의 쪽번호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설명자료 합본작업으로 인해 제출한 자료와 쪽번호가 다름.

끝.

7) 참석위원 서명

2025년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 참석명부

■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025. 0. 0. (목) 14:00 ~
-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상정안건 : 00건 (심의 00건)

■ 청렴서약서

본인은 본 안건을 심의·의결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본 안건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3. 본 안건의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를 직·간접적으로 개별접촉하지 않겠으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접촉한 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4.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 분	위 원 명	서 명	구 분	위 원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8) 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2025년 제1차 도시공원위원회 진행(안)**■ 공원조성과장**

-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입니다.
- 바쁘신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그럼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님 부재시-오늘 위원장님이신 행정2부시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부위원장님이신 ○○○ 위원님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자 합니다.)

■ 위 원 장

-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오늘 위원회 상정 안건은 총 0건으로 심의 0건 입니다.
-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지난 제00차 본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 위 원 장

- 먼저 지난 번 위원회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조성과장

- 지난 00월 00일에 개최한 2024년도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0건으로 원안가결 0건, 조건부가결 0건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그리고 그간 한 차례의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지난 0월 0일 개최된 제0차 소위원회 안건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자문 1건, 개발사업 공원조성 관련자문 1건
이었습니다.
- 이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안전 회피 사유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테이블 위 안내문에 기재된 안전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장

- 다음으로 그간 소위원회에서 자문한 안건 중, 본위원회 심의대상인 안건들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에 위임규정이 없는 소위원회는 의결권한이 없으므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 일부안건은 소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함

-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최초결정 1건 입니다.

-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최초결정건은 조건부 동의 결정 되었습니다.

- 소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안) 별도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 자문결과와 같은 내용으로

조건부동의된 안건을 조건부가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의진행 ⇨ 의견 수렴 ⇨ 안건 심의 결과도출)

(의사봉 3타)

8) 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안건 1 (심의)

■ 위 원 장

- 첫 번째 안건으로 ‘_____’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설명(○○구 공원녹지과장) -

■ 위 원 장

- 본 안건과 관련해
입안부서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응 답)

- 이상 질문 없으시면 입안부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 의견 수렴 ⇨ 안건 심의 결과도출)

■ 위 원 장

- ‘_____’ 에 관한 건은
(원안 가결, 조건부 가결, 재심의, 보류, 부결)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회의결과 발표

[상정안건 심의가 모두 끝난 후]

□ 위 원 장

- 오늘 상정된 안건 00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00건 중

- 원안가결 (건)
 - 조건부가결 (건)
 - 재 심 의 (건)
 - 보 류 (건)
 - 부 결 (건)
- 오랜 시간동안 심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이것으로 2025년도 제0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0차 위원회는 **2025년 0월 0일 화요일 14시**에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10)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5년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보고 합니다.

1. 일 시 : 2025. 0. 0. (목) 15:00~18:05
 2. 장 소 : 소서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3. 참석대상 : 도시공원위원 17인(외부 16인, 내부 1인)
 4. 상정안건 : 원안가결 1건, 조건부가결 5건, 보류 1건
- 가.
나.
다.
라.
마.
바.

붙임 1. 도시공원위원회 참석명부 1부.

2.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1부. 끝.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25.00.00.(화) 15:00 ~ 18:05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석인원 : 00인 (외부 00, 내부 0)

☐ 심의결과 : 원안가결 0건, 조건부가결 0건, 보류 0건

연번	요청기관	상 정 안 건	결 과
1			보류 (현장조사)
2			조건부가결
3			조건부가결
4			조건부가결
5			조건부가결
6			원안가결
7			조건부가결

10)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1.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요청기관 : 00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 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00구 ○ 면적 : ○ 공원결정(최초) : ○ 조성계획(최종) : < 주요 변경내역 > ○ 기반시설 : ○ 편익시설 : ○ 녹지 및 기타 : < 법적검토 > ○ 시설률 : 3.09% → 3.16% (법정 20% 이내) ○ 건폐율 : 0.08%	<u>보류(현장조사) / 원안가결/ 조건부가결</u> ○ ○ ※ 권고사항

11)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00차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1. 공원조성과-0000(2025.0.0.)호와 관련입니다.
2. 2025년도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통보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조성계획결정 요청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조성계획결정 요청 시 제출서류 : 변경 전·후 조서 및 도면(CAD, PDF)
 - ▶ 조건부가결(동의) 된 안건은 붙임2의 심의(자문)의견 조치계획서 제출
3. 아울러, 공원조성 시 결정고시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사항 발생 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결과 1부.

2.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조치계획서(서식) 1부. 끝.

12) 조치계획

도시공원공원위원회 심의(자문) 조치계획서

□ 공 원 명 : 00근린공원(00구)

□ 심의일자 : 제0차 도시공원위원회(2025.00.00.)

연번	심의내용	조치사항	반영여부
1	이식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의 생리를 고려하여 이식 계획 재검토 [도면삽입]	- 공원심의시 계획했던 이식수목 중 벚 타세콰이어 B25~50 18주, 은행 나무 B25~40 6주는 수목생육을 고려하여 이식하지 않고 존치 - 이식수목 중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울 수 있는 왕벚나무 B30 이상 수목은 이식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도면삽입]	반영
2	[도면삽입]	[도면삽입]	부분반영
3	[도면삽입]	[도면삽입]	미반영

※ 필요시 심의(자문)의견 반영 도면 별첨

6.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9378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공원 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개정 2011. 4. 14.> ②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公報)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16.]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12. 3. 13., 2019. 6. 11.> 1. 삭제 <2010. 6. 29.>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한다) 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허가된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설치 및 폐지 2.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한다. 3.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다만 이 경우에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9378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시·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0. 5.> ②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2. 3. 15., 2017. 5. 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2. 공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2023.12.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 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전문개정 2009. 1. 8.]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1. 8.] 제2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를 소집하되, 상정안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 8.] 제2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8.]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2024.1.3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

제2조(회의의 소집) 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분하며, 본위원회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소위원회는 첫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제3조(상정안건) ① 도시공원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개최 10일 이전에 서울특별시에 접수된 것에 한한다.

② 안건에는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 또는 공원관리 사무소장이 입안과정에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주요안건에 대하여는 필요시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고 그 결과를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③ 시장이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5.]

제4조(출석범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위원은 대리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위원
3. 간사 및 서기
4. 실무 추진부서 및 전문기관의 당해안건 검토 책임자
5. 기타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제5조(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례 제26조 3항에 따라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0.24.]

제6조(회의출석) 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명단은 공개하고, 회의록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20.]

제8조(유 회)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의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한다.

제9조(전회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 등의 배포)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를 가급적 회의개최일 3일 전에 배포한다.

제11조(제안취지 및 현황설명) ①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 및 현황 설명은 간사 및 입안권자가 발표자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인물로 설명한다.[개정 2018.5.15.]

② 다만, 현장여건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정안건 관계공무원 또는 설계자가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1.]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진행 등)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은 동일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회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③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24.01.3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2024.1.30.)

제14조(의결) ① 심의에 따른 의결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원안가결"은 상정안건의 의결주문과 같이 심의 의결함을 말한다.
2. "조건부가결"은 상정안건의 의결주문 내역을 수정하거나 의결주문외의 항목을 부가(추가)하여 심의 의결함을 말한다.
3. "재심의"는 상정안건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어 안건을 재작성하여 다음회의에서 재논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4. "보류"는 결정요청안에 대한 추가정보나 선결 조건(과제)이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한 경우를 말한다.
5. "부결"은 상정안건의 의결주문 내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자문에 따른 의결유형은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자문, 보류, 부동의로 하고 (민간공원 제안자문은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로 의결), 보고에 따른 의결유형은 원안수용, 조건부수용, 재보고로 하며 내용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한다. [개정 2018.5.15.]

③ 회의결과 부결·부동의 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 단, 부결·부동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대상지 또는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등으로 재상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5.15.]

제15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시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1. 개의,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상황
5. 위원 발언내용

② 간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과 심의결과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함께 서명 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③ 시장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0.]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에는 참석위원 및 발언위원 성명을 "○○○"으로 표기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2.2.20.]

제16조(소위원회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자문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6.18.]

1. 개발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자문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3. 공원 내 건축물 설계공모 전 사전자문
4.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사항
5.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6.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자문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미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1. 공원조성계획
2. 공원조성계획 변경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장조사를 지시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조사·자문한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같은항 제1호 중 공원조성계획의 의제조항이 없는 개발사업과 같은항 제2호의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사전 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개정 2019.6.18.]

제17조 삭제[2020.10.22.]

제18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 상 숙지한 공원조성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매뉴얼

2025년 3월 발행

발 행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연락처 | 공원조성과 02-2133-2079~2081

비매품